

이슬람 금융분야 심층 연구

2018년 2월

국세청
김 지 연

< 차례 >

□ 국외 훈련 개요	4
□ 훈련 기관 개요	5
□ 훈련 결과 보고서 요약	7
I. 서론	16
1. 연구과제 선정사유	16
2. 연구의 필요성	17
2. 연구의 방향	17
II. 이슬람 금융	20
1. 이슬람 금융의 개념	20
1) 이슬람 금융시스템	20
2) 이슬람 금융의 주요 원칙	21
3) 이슬람 금융거래	22
2. 이슬람 금융의 세계적 추이	32
1) 글로벌 이슬람 금융	32
2) 글로벌 이슬람 금융의 발전	33
3) 이슬람 금융의 발전 요인	36
3. 아시아의 이슬람 금융	38
1) 아시아의 이슬람 금융 시장	38
2) 동남아시아의 이슬람금융	39
3) 그외 아시아지역의 이슬람금융	41
III.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	43
1.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역사	43

2.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성장 배경	46
3. 말레이시아 정부의 제도적 • 정책적 지원	49
1)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 규정 및 감독	49
2)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 관련 회계 및 조세 제도	57
IV. 한국의 이슬람 금융	69
1. 한국 이슬람 금융의 역사	69
2. 이슬람 금융 도입의 필요성	72
3. 한국의 이슬람 금융 도입 현황	76
1) 한국 정부의 도입 현황	76
2) 금융업계의 도입 현황	77
3) 기타 유관기관 현황	80
4. 한국의 이슬람 금융 도입 관련 이슈	80
1) 국내 법규 관련 이슈	80
2) 다른 나라의 도입 사례 분석	87
V. 결론 및 제언	104
VI. 참고문헌	107

국외훈련개요

1. 훈련국 : 말레이시아
2. 훈련기관명 : 헬프대학교
(HELP University)
3. 훈련분야 : 조세제도
4. 훈련기간 : 2016. 04. 05 ~ 2018. 04. 04

훈련기관 개요

1. **훈련기관명:** HELP University
2. **소재지:** ELM Business School, No. 15, Jalan Sri Semantan 1, Bukit Damansara, 50490 Kuala Lumpur, Malaysia
3. **웹사이트:** www.help.edu.my
4. **전화번호, FAX번호:** (전화)+6 03 2716 2000 (Fax)+6 03 2094 7495

5. 훈련기관

1) 연 혁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사립대학인 HELP대학교는 1986년 Paul Chan Tuck Hoong과 CEO Chan- Low Kam Yoke에 의해 설립됨.

2) 소속대학에 대한 개략적 설명

○ HELP는 higher Education Learning Philosophy의 약자로 HELP University는 HELP College of Arts and Technology와 HELP Academy와 함께 HELP 교육재단(HIC)에 속해 있음

○ HELP University는 Jalan Sri Semantan에 위치한 ELM Business School(본 캠퍼스), Jalan Dungun에 위치한 Kompleks Pejabat Damansara(KPD), Wisma HELP, 2016년에 완공된 사립대학 최대규모의 친환경 캠퍼스인 Subang2 캠퍼스 등 4개의 캠퍼스로 나뉘어 있음.

○ 2016년 현재 총 12,000명의 재학생들이 수학중이며, 이 중 2,000여명은 다양한 국적의 국제학생들로 구성(설립이래 92개국 국적의 학생들이 수학함)

- 현재 14개의 석박사 프로그램을 운영중임
-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MBA)
 - Master of Entrepreneurship (MEntrep)
 - Master of Executive Management (MExecMgt)
 - Master of Project Management (MProjMgt)
 - Masters in Counselling
 - Master of Clinical Psychology
 - Master of Education in Teaching English
 - Master of Entrepreneurship (MEntrep)
 - Graduate Certificate in Accounting (GradCertAcct)
 - Master of Corporate Governance (MCorpGov)
 - Doct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DBA)
 - Master of Managerial Psychology
 - Master of Applied Psychology in Coaching
 - Master of Economic Crime Management

3) 소속학과 소개

○ Master of Corporate Governance

○ 본 학과의 주요 목적은 기업 지배 구조의 이론, 원칙 및 실천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것임. 사업의 윤리 및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Risk Management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함. 본 과정에서 습득한 전문 지식은 개인 및 공공 기관 모두의 거버넌스에 유용함.

훈련결과보고서 요약

성 명	김 지 연	소 속	서울지방국세청
훈 련 국	말레이시아	훈련기간	2016. 04. 05 ~ 2018. 04. 04
훈련기관	HELP University	보고서매수	110매
훈련과제	이슬람 금융분야 심층 연구		
보고서제목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이슬람 금융분야 심층 연구		
내용요약	<p>I. 서론</p> <p>본 연구의 목적은 이슬람 금융에 대하여 심층 연구하여 한국의 금융시장 선진화에 기여하는데에 있다. 이슬람 금융 산업은 풍부한 오일머니와 그에 따른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세계적으로 급속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슬람 국가들 뿐 아니라 비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서도 이슬람 금융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노력이 계속 되고 있으며, 기존의 금융의 대안책으로서 안정성과 윤리성을 특징으로 하는 이슬람 금융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그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 금융기관들과 정부도 이슬람 금융의 국내 도입을 위한 발걸음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이슬람 금융은 2011년 관련 이슬람 금융 도입을 위한 초석인 관련 법안 개정이 무산되면서 사실상 정부의 제도 개선은 중단된 상황이다. 반면, 훈련(연구)국인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금융의 허브로서 이슬람 금융 발달을 위해 각종 세제 지원 및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 관련 제도</p>		

내용요약	<p>및 정책 등의 연구를 통해 이슬람 금융을 안정적으로 도입, 금융 시장을 선진화하여 ‘창조금융’을 실현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p> <p>II. 이슬람 금융</p> <p>이슬람 금융은 근본적으로 이슬람 교리의 원칙과 가치를 기반으로 실행되는 하나의 금융 시스템이다. 기존의 금융 시스템과 차별화되는 주요한 특징으로는 이자, 도박, 불확실성과 같은 행위와 알코올, 마약, 무기 등 금지된 물건들의 판매의 금지가 있다. 이슬람 금융 서비스는 저축/거래 계좌, 소비자 금융, 기업 금융, 투자 금융, Corporate Sukuk(회사채) 발행, Sovereign Sukuk(국채) 발행, 펀드 관리, 증권 거래, Takaful, Retakaful, 협동조합, 저축기관 등 다양한 형태이며, 이슬람 거래 유형으로는 거래 형태에 따라 Murabaha, Ijarah, Istisna, Mudarabah, Musharakah 등이 있다.</p> <p>세계적으로 이슬람 금융은 단지 이슬람교를 위한 종교 은행을 뛰어넘어, 비 무슬림인 고객들의 이해와 수용으로 인해 금융 산업에서 하나의 큰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세계적으로 이슬람 금융은 그 규모가 2006년 500억 달러에서 2017년 3,190달러 규모로 6배나 성장했으며, 지난 10년간 11%대의 두 자릿수 성장을 해왔다. 영국, 필리핀, 독일 등 비이슬람 국가에서도 성장 중이며, 현재 33개국 이 이슬람 금융을 도입, 운영하는 등 세계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p> <p>그 중에서도 수쿠크 부문의 발달은 두드러졌다. 글로벌 수쿠크 시장은 전반적으로 그 입지를 넓혀가고 있으며, 점점 더 매력적인 자금 조달 수단으로 자리 매김 하고 있다. 2014년 19개국 이 수쿠크를 발행하였으며, 2009년 10개국에서 5년 만에 두배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 세</p>
------	--

내용 요약	<p>네갈, 홍콩 및 룩셈부르크를 포함한 새로운 시장에서의 성공에 힘입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으로 수쿠크 시장은 2009년 123억2천만달러에서 2014년 말 3,000억 달러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세계적인 이슬람 금융 산업의 발달 요인으로는 증가하는 무슬림 인구와 생활수준의 향상, 이슬람 금융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 이슬람 금융 상품의 윤리적인 성격과 재정적인 안정성과 그에 따른 수요의 증가를 들 수 있다.</p> <p>이슬람 금융은 지리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GCC국가와 동남아시아 지역과 같은 신흥 시장으로의 성장이 집중되었다. 아시아 경제는 세계 경제와 이슬람 금융 시스템의 중추적인 부분으로 세계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아시아의 이슬람 금융 환경은 최근 수 년 동안 아시아의 견실한 성장 궤적을 이끌어 낸 이슬람 बैं킹 및 수쿠크 부문이 차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 같은 이슬람 국가들에서 아시아의 이슬람 금융 성장전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며, 강한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이슬람 국가가 아닌 싱가포르, 홍콩, 일본과 같은 역동적인 경제 지역과 중국과 인도 같은 인구가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도 이슬람 금융에 대한 관심과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p> <p>III.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p> <p>말레이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금융 시장 중 하나이며, 지난 10년간 50%이상의 글로벌 수쿠크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UAE, 바레인과 함께 이슬람 금융 분야의 전반적인 시장 리더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규제 변경, 관련 세계 지원 및 교육 자원 확대 등 강력한 말레이시아 당국의 지원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처럼 강력한 지원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까지의 이슬람 금융 산업의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p>
-------	--

내용요약	<p>2014년, 이슬람 금융 부문은 말레이시아 전체 은행 시스템 총자산 중 25.6%를 차지하여, 12%의 성장율을 나타냈다. 2014년 이슬람 금융 자산은 6,122억 링깃으로 2010년 3,512억 링깃 대비 거의 두배로 증가하였다. 외환 자산도 이슬람 금융에서의 국가간 거래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277억 링깃으로 크게 증가했다.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 업계는 연 평균 10~15%의 성장률을 나타내며 꾸준히 성장해왔다.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외국 소유 금융기관, 이슬람 자회사를 설립한 기존 금융기관, 외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 상당수의 이슬람 전업 금융기관들이 있다.</p> <p>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 산업의 성장 배경으로는 이슬람권에서의 높은 위상, 중국, 인도 등 신흥 경제국들의 중심에 위치한 지정학적인 이점 및 이슬람 금융 상품 개발에 있어 유연하게 이루어지는 샤리아 해석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성장 배경으로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명확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그에 따른 이슬람 금융 환경 구축을 들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금융을 정책적, 제도적으로 지원, 육성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1년 발표한 금융산업 마스터플랜을 시작으로 다양한 세제 혜택, 샤리아에 맞는 법률의 개정, 이슬람 금융 전문 인력 육성 및 금융 상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왔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하에 이슬람 금융 상품의 혁신, 전세계의 다양한 금융 기관들, 광범위한 혁신적인 이슬람 투자 기법, 글로벌 규제 및 법적인 모범 사례 등을 채택한 포괄적인 이슬람 금융 인프라가 탄생했다. 인프라 구축 뿐 아니라 이슬람 금융 인재의 확보를 위해 인적 자원 개발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말레이시아를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이슬람 금융 시장의 하나로 변화시켰다.</p>
------	---

<p>내용요약</p>	<p>말레이시아 금융의 총괄적인 규제 및 감독 기관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며, 다른 감독 기관으로는 국가의 자본 시장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기관인 증권위원회가 있다. 라부안 역외금융서비스당국 또한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과 관련된 감독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2013년 이슬람 금융 서비스법(IFSA 2013 /Islamic Financial Services Act 2013)를 제정하며, 이슬람 금융 업계에서 샤리아 관련 개발을 증진하는데 주력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정비뿐만 아니라, 이슬람 금융에 대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2006년 말레이시아 국제 이슬람 금융 센터(Malaysia International Islamic Financial Centre/ MIFC)를 설립한 것이 그 예이다. MIFC 이니셔티브는 특히 말레이시아 금융 및 시장 감독 기관들의 공동 노력으로 MIFC의 개발 및 발전을 위해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이슬람 금융 감독 위원회(Islamic Finance Services Board/ IFSB)를 설립하여 이슬람 금융, 보험 산업 및 자본 시장에 대한 세계적인 기준 및 가이드 원칙 제시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p> <p>말레이시아는 조세 측면에 있어서도 이슬람 금융의 조세 중립성과 세제 혜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해왔다. 현재 말레이시아의 세법은 세금 중립에 관련된 조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금융 거래가 세법상 기존 금융 거래와 유사하게 취급될 수 있다. 이러한 조세의 중립성은 기존 금융 상품과 이슬람 금융 상품간의 공정한 경쟁을 장려해 이슬람 금융이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조세의 중립성은 크게 세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샤리아 원칙에 따라 수행된 금융 거래에서 이자 대신 발생하는 수익을 이자로 취급하여 기존 금융거래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이슬람 금융 거래의 특성상 수반되는 자산의 처분 및 리스 행위로 인해 추가적인 세금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샤리아 원칙</p>
-------------	--

내용요약	<p>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추가적인 문서들에 관하여 인지세 면제를 규정하여 기존의 금융과 비교하여 인지세의 이중 부과를 방지했다.</p> <p>말레이시아 정부는 기존 금융과의 조세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뿐만 아니라, 이슬람 금융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시행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세금 인센티브는 크게 은행, 타카풀 및 펀드 관리 등 다양한 이슬람 금융 거래에 대한 인센티브,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 거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및 전문 기술에 대한 인센티브 세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세금 인센티브로는 외화로 거래되는 이슬람 은행 및 타카풀 회사에 대한 세금 면제, 승인된 금융 기관으로부터 비거주자가 받은 이자 수입에 대하여 원천세 면제, 이슬람 원칙에 따른 사적 채무 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자산의 처분으로 발행하는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고등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중앙은행이나 증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이슬람 금융 교육과정에 대한 개인 세금 경감, Mudharabah, Musharakah, Ijarah, Istisna 원칙에 기초한 이슬람 증권 및 증권위원회 또는 라부안 금융서비스국이 승인한 이슬람 증권의 발행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세액 공제, 특정 이슬람 금융 상품에 대한 인지세 면제 등이 있으며, 이슬람 금융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p> <p>IV. 한국의 이슬람 금융</p> <p>한국의 이슬람 금융에 대한 역사는 짧다. 2007년부터 국내 기업, 특히 증권회사에서 이슬람 금융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무슬림 국가의 금융기관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국내 금융 기관들 뿐 아니라, 한국 정부도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이슬람 금융에 대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2008년 한국 중앙은행 Islamic Financial Services Board(이슬람 금융 감독 위원회)</p>
------	--

내용요약	<p>의 observer회원이 된 것을 시작으로 이슬람 금융 활성화 TF의 운영, 제6회 이슬람 금융 서비스 회담에서 한국 설명회(Korea showcase) 개최 등 대외적인 활동을 지속하였다. 하지만, 이슬람채권 도입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2009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종교계의 반발로 인해 무산되면서, 말레이시아 기업들과 함께 수쿠크를 발행하려던 일부 기업들이 타격을 받았다. 현재까지 관련 법률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한 상태로 사실상 이슬람 채권의 도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p> <p>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금융의 국내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기존 금융시스템에 비해 높은 이슬람 금융의 재정적인 안정성과 급속히 증가하는 글로벌 이슬람 금융 산업을 바탕으로 한 외환 자금 조달의 경로의 다양화에 있다.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외환 유동성 위기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하여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여 오일 머니 등 풍부하고 다양한 자금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p> <p>이슬람 금융의 도입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한국의 세법 문제이다. 앞서 살펴본 말레이시아의 경우 기존 금융과 이슬람 금융의 조세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상 여러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조세의 중립성을 위한 규정이 전무한 상태이다. 기존의 금융과 비교하여 각종 세금이 추가적으로 부과되므로 기존 금융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중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의 조세의 특성상 이슬람 금융, 특히 이슬람채권인 수쿠크의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p> <p>이러한 한국의 상황에서 안정적인 이슬람 금융의 도입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의 이슬람 금융 도입 사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한국과 유사점이 많은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은 이슬람 금융 분야에서는 한국보다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p>
------	---

<p>내용요약</p>	<p>주고 있다. 이슬람 금융의 경제적인 가치를 인식한 일본 정부는 이슬람 금융 이니셔티브를 창안하고 일본 내에서의 이슬람 금융 촉진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슬람 금융의 국내 활용을 위하여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련된 세제 개편에 힘써왔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 한국보다 더 성숙한 이슬람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서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주변의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와 비교했을 때 이슬람 인구가 많은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를 목표로 이슬람 금융 도입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발돋움 하기 위하여 기존 금융의 대안책이 될 수 있는 이슬람 금융에도 막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법률과 제도 등을 정비해오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정책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이룩한 선진화된 금융 제도와 규제 환경을 통해 이슬람 금융 또한 비교적 문제 없이 정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프랑스의 이슬람 금융 발전은 국내 재정을 위해 이슬람 금융에 적절하고 친근한 환경을 조성한 프랑스 정부의 강한 지원에서 기인한다. 프랑스 정부는 국내 이슬람 금융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이슬람 금융 도입 지원 정책과 더불어 프랑스는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더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국은 서구에서 이슬람 금융 분야에 있어 가장 큰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2000년대부터 이슬람 금융의 성장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규제·감독 및 조세의 측면에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노력에 힘입어 영국에서 이슬람 금융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세계에서 9번째 규모의 이슬람 금융 시장이 되어, 비 이슬람국가들 사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이슬람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다.</p>
-------------	--

<p>내용요약</p>	<p>V. 결론 및 제언</p> <p>본 연구에서는 이슬람 금융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슬람 금융의 세계적인 추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이슬람 금융에 대한 수요 및 시장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말레이시아, 일본, 싱가포르, 프랑스, 영국의 이슬람 금융 도입 사례를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필요한 시사점과 우리나라의 제도적·정책적 측면에서의 제언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이슬람교의 기반이 없더라도 이슬람 금융을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이슬람 금융의 성공적인 국내 도입을 위하여 조세 관련은 물론 종합적이고 폭넓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조세 분야에 있어서의 개선은 이슬람 금융의 도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기존 금융과 비교하여 동등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세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정비뿐 아니라, 이슬람 금융 관련 기구의 설치, 관련 가이드 및 지침 마련, 이슬람 금융권과의 활발한 대외 활동 및 협력, 이슬람 금융 관련 전문가 양성 등 선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활동도 요구된다.</p> <p>한국이 이슬람 금융을 도입해야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외환 자금 조달의 경로를 다양화 하는데에 있다. 미래에 다가올지 모르는 금융 위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책으로 이슬람 금융을 안정적으로 도입하여 오일 머니 등 풍부하고 다양한 자금 경로를 확보함과 동시에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실현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p>
-------------	--

I. 서론

1 연구과제 선정사유

중동 및 동남아시아 등의 이슬람권 경제는 오일머니의 대거 유입과 그에 따른 가파른 경제성장으로 풍부한 오일머니와 유동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슬람 금융 역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HSBC, CITI BANK, UBS, AIG 등 다국적 대형 금융기관들도 이슬람 금융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며, 말레이시아, 일본, 영국, 중국, 싱가포르 뿐 아니라 이슬람권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미국도 이슬람 금융 활용과 도입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슬람 금융이 지역적 금융이 아닌 국제금융을 리드하는 국제금융 투자수단으로서의 가능성과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슬람 금융 도입 상황은 그리 밝지 못하다. 우리나라는 2011년도 이슬람 금융의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법안 상정하려 했으나, 정치권 및 종교단체의 반대에 상정처리하지 못하였다. 그 이후에 여러차례에 걸쳐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사실상 이슬람 금융 도입을 위한 정부의 제도 개혁은 중단된 상태이다.

말레이시아 국제금융센터(MIFC)는 이슬람 금융 허브로서 말레이시아의 이슬람채권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 및 각종 인센티브 정책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이슬람채권 도입시 문제가 되는 각종 조세정책 등을 연구해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규제완화, 세제지원을 통해 이슬람 금융을 안정적으로 도입하여 우리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필요성

한국경제는 중동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성장해 왔다. 이슬람채권인 수쿠크의 발행규모는 2012년 기준 1천5백억 달러 규모로서 이슬람채권의 국내 도입으로 인해 국내기업의 자금조달 경로를 아랍권으로 확대할수 있으며, 금융시장의 다각화 및 선진화를 통해 실물경제 선순환의 원동력이 되어 우리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제고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

이슬람 금융 시장 규모는 현재 1.5조~2조 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매년 평균 20% 수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중이며, 종래 말레이시아, UAE 등이 선도하던 시장 구조도 중동, 아프리카 역내 이슬람 국가뿐 아니라 영국, 홍콩, 일본 등 비이슬람 지역에서 다극화 추세이며, 상품 종류도 하이브리드 스쿠크, 파생금융상품, 머니마켓상품, 무역금융, 리츠, 뮤추얼펀드, 선박금융등 다양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제조업에 기반하여 고도성장을 구가하였으나 이러한 성장정책이 더 이상 향후의 성장을 담보하지 못하고, 정부의 핵심정책인 창조경제는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통해 실현이 가능하므로 금융산업의 성숙도가 높은 국가의 사례를 연구하고 그 훈련결과를 전파·공유하여 우리나라의 이슬람 금융제도 도입에 활용함으로써 ‘ 창조금융 ’의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방향

미래에 다가올 지 모르는 외환 위기에 대비하고, 외화 자금 조달 경로를 다양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이슬람 금융의 국내 도입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슬람 금융에 대하여 심

층적으로 연구한다.

II장 이슬람 금융에서는 이슬람 금융 시스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이슬람 금융의 주요 원칙 및 샤리아 원칙에 대하여 서술한다. 이슬람 금융 거래의 일반적인 유형을 알아보고 Murabaha(무라바하) 등 대표적인 이슬람 거래 유형을 연구하여 이슬람 금융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다. 또한, 이슬람 금융의 세계적 추이를 살피기 위하여 글로벌 이슬람 금융의 발전 과정과 그 요인을 살펴보고, 현재의 글로벌 이슬람 시장 현황에 대하여 연구한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지역의 이슬람 금융 발달 과정 및 현황과 함께 아시아 각 나라별로 특징적인 이슬람 금융 현황을 살펴본다.

III장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에서는 혼련(연구)국인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에 대하여 심층 연구한다.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발달 과정 및 역사를 비롯하여, 이슬람 금융을 성장시킨 배경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어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 규제 기관들과 관련 법규들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슬람 금융 발달의 중요한 성장 요인인 말레이시아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지원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연구한다. 특히, 조세의 중립성과, 이슬람 금융 관련 세제 혜택에 대하여 연구하여 한국의 이슬람 금융 도입 정책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IV장 한국의 이슬람 금융에서는 한국 이슬람 금융의 역사를 알아보고, 한국 정부의 이슬람 금융 도입을 위한 주요 활동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내 이슬람 금융이 도입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동안 한국 정부와 금융업계 등이 행해온 노력과 그에 따른 도입 현황에 대하여 알아본다. 현재의 국내법상 이슬람 금융 도입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특히, 법률 개정에 실패한 세법 관련 이슈들을 심층 연구한다. 한국의 이슬람 금융 도입의 걸림돌이 되는 이슈들을 다른 나라의 경우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연구하기 위하여, 일본, 싱가포르, 프랑스, 영국 의 이슬람 금융

도입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에 이슬람 금융이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활용하고자 한다.

앞선 연구들을 바탕으로 V장 결론 및 제언에서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과 그에 따른 제언사항을 서술한다.

II. 이슬람 금융

1 이슬람 금융의 개념

1) 이슬람 금융 시스템

이슬람 금융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이슬람 교리의 원칙과 가치를 기반으로 실행되는 경제시스템 내 하나의 금융 시스템이다. 이슬람 금융은 특히 잉여 상태와 부족 상태의 경제 주체들을 찾는 금융 관련 경제활동을 관리하는 이슬람 경제 시스템의 하나이다. 또한, 경제부문에 있어서 재산관리(Tasarruf maliyyah)와 관련된 모든 활동들과도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 재산이란 일반적으로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형태 등을 의미하며, 이들의 손실은 소유자에게 손실을 초래한다.

말레이시아 학자(Mohd Daud Bakar, 2003)에 따르면¹⁾, 이슬람 금융은 이슬람 경전인 al-Qur'ân 과 al-Sunnah, 이티하드 학자들로부터 파생된 이슬람 율법에 부합하는 금융시스템을 가리킨다. 이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과는 구별되는 특정 특징들을 기반으로 한다. 그 중에서도 Riba(이자), Judi(도박), Gharar(불확실성)²⁾ 와 같은 행위와 알코올, 마약, 무기와 같은 금지된 물건들의 판매를 금기시 한다. 이슬람 금융의 주요 목적은 이슬람 경전에 기초한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Shariah)와 부합하면서, 그동안 존재해왔던 기존의 금융시스템과 경쟁할 수 있는 이슬람의 포괄적인 금융시스템의 확립이다. 따라서, 이슬람 금융은 al-Qur'ân과 al-Sunnah이 제시하는 목표와 운영면에서의 샤리아 원칙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1) KONSEP SISTEM KEWANGAN ISLAM(Open University Malaysia)

2) Riba, Judi, Gharar: 이슬람금융에서 금지하는 3가지 근본 사항. Riba는 이자를 뜻하며, 부당한 이득 또는 이익으로 분류되어 금지됨. Judi는 도박을 뜻하며, 투기 거래, 파생상품 거래와 같은 전통적인 금융기법을 부정함. Gharar는 불확실성을 뜻하며, 상품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 등 계약상 발생가능한 불확실성들을 의미함.

이슬람 금융 시스템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 샤리아 원칙에 따라, 생산, 사용 및 전환 목적을 위한 충분한 자본을 축적한다
- ▶ 모든 사회와 이슬람교도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에 자본은 분배한다
- ▶ Riba(이자)와 Gharar(불확실성)과 같은 부정적이고 불법적인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시장에서 상품 가격의 안정성을 결정한다
- ▶ 깨끗하고 번영하는 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개개인부터 노력한다
- ▶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의 원칙을 실현한다

이슬람 경제 체제는 al-Qur'ân과 al-Sunnah에 기초를 두고 있다. al-Jarhi (1981)에 따르면, Riba(이자) 금지, Zakat(이슬람의 종교세) 의무, 모든 형태의 세금 집행, Muamalat(이슬람 법에 따른 상업 및 민사 행위 또는 거래) 규칙 및 규정의 이행, 재산에 대한 의무과 권리의 6가지 항목을 다루고 있다. 이슬람 금융은 정부와 사회와 함께 개인과 무슬림간의 경제적인 관계속에서 부의 소유 및 관리, 분배 방법 등을 가르치는 일련의 규칙으로 이슬람 율법을 근간으로 한다.

2) 이슬람 금융의 주요 원칙

이슬람 금융을 간단히 말하면 Shariah, 즉 이슬람 율법문에 기초한 금융의 한 형태이다. 이는 공정성 (가격 조작의 금지), 투명성 (적절한 정보 공개 권장) 및 위험의 공유 (상호 협력과 상호 이익 권장)와 같은 특정된 윤리적 가치에 따라 샤리아 법을 준수하는 금융 거래를 수행하는 금융 형태이다. 이슬람 금융에서 샤리아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다섯가지 핵심 원칙이 엄격하게 요구된다.

이슬람 금융의 다섯가지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

- ▶ 신성한 인도에 대한 믿음
- ▶ 이자 수수 금지
- ▶ 금지된 투자 금지
- ▶ 위험부담의 공유 권장
- ▶ 파이낸싱은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함

3) 이슬람 금융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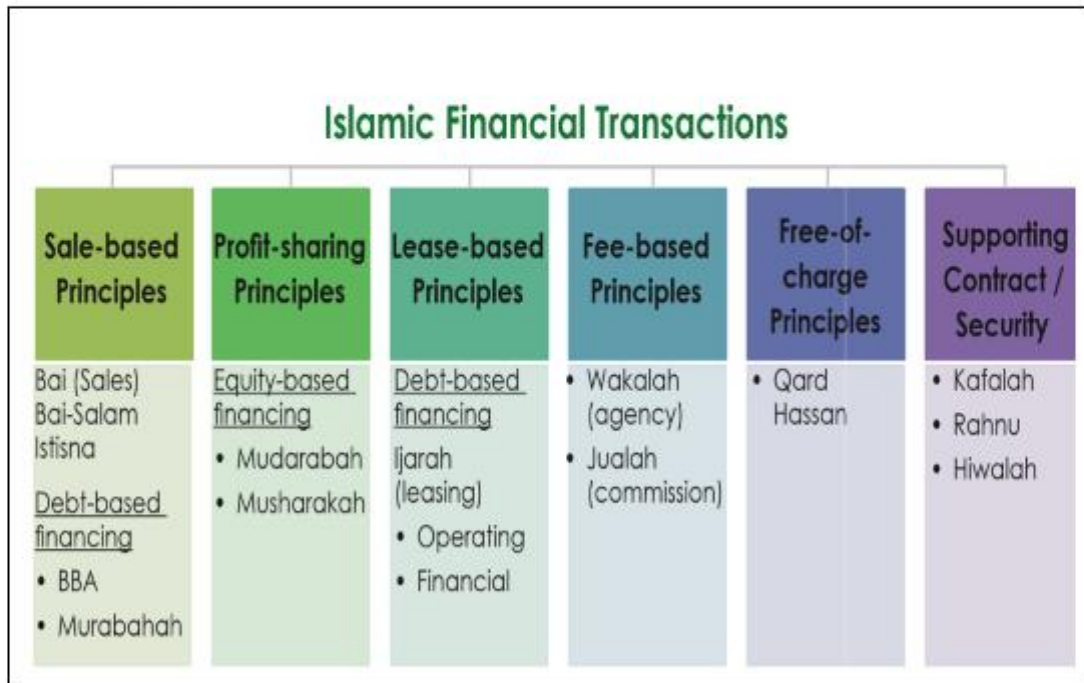
말레이시아에서 가능한 이슬람 금융 서비스로는 저축/거래 계좌, 소비자 금융, 기업 금융, 투자 금융, **Corporate Sukuk(회사채)**³⁾ 발행, **Sovereign Sukuk(국채)** 발행, 펀드 관리, 증권 거래, **Takaful**⁴⁾, **Retakaful**⁵⁾, 협동조합, 저축기관 등이 있다.

3) Sukuk(수크크): 이슬람 채권. 이자를 금지하는 샤리아 원칙에 따라 투자자들은 배당금으로 수익을 배당 받음.

4) Takaful(타카풀): 샤리아 원칙에 따라 상호부조와 각출로 운영되는 협동 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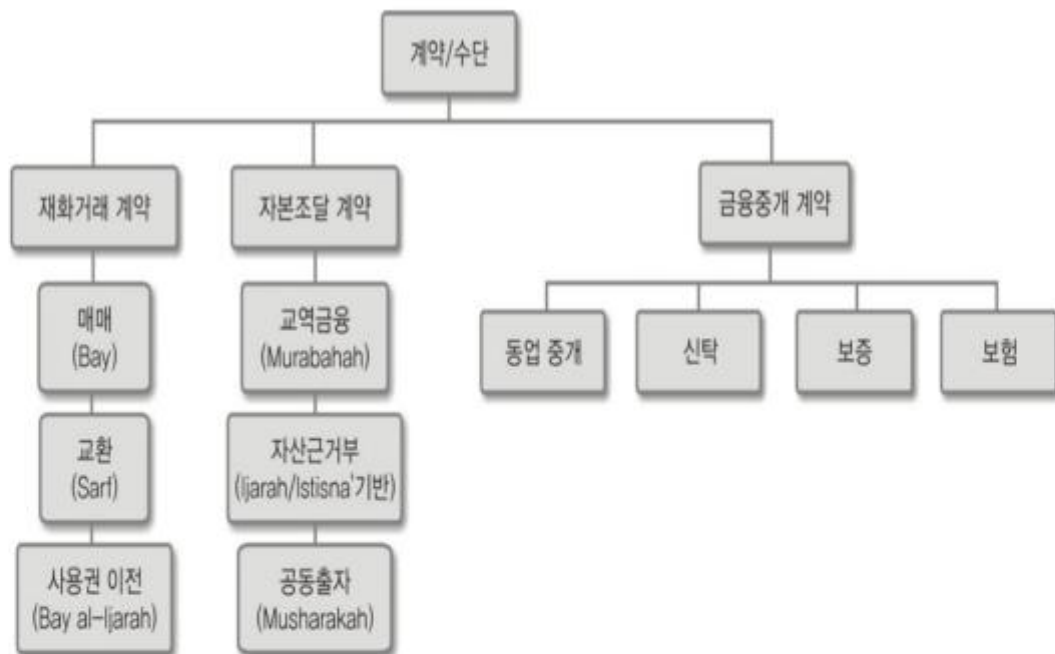
5) Retakaful(리타카풀): 샤리아 원칙에 의해 운영되는 재보험(Reinsurance)

[그림 II-1] 이슬람 금융 거래의 일반적인 유형



※ 출처: Malaysian Institute of Accountants(MIA)

[그림 II-2] 이슬람 결제의 기본적인 계약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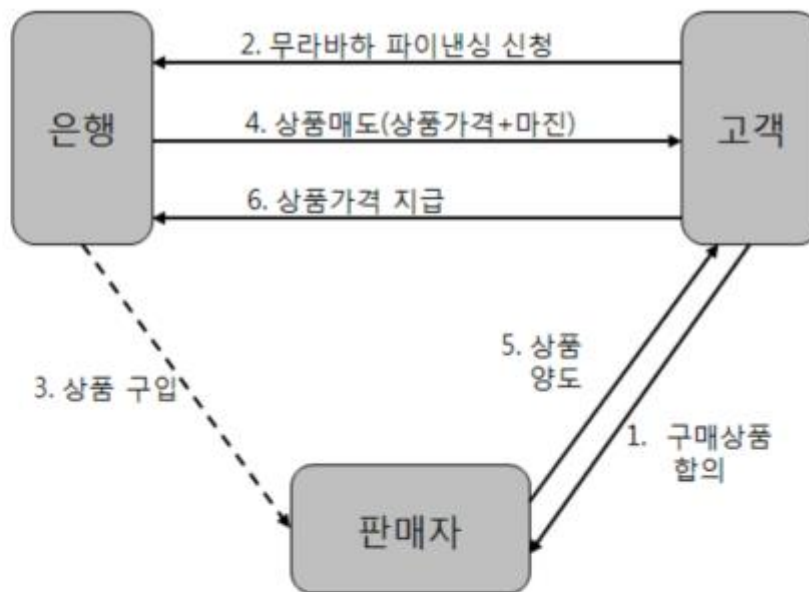
※ 출처: 강대창(2012).“이슬람 금융의 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수륙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표적인 이슬람 거래 유형은 다음과 같다.⁶⁾

(1) Murabaha(무라바하)

이슬람 금융기관의 파이낸싱에서 가장 흔한 계약인 무라바하는 판매 계약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기존 금융의 할부 금융과 유사한 구조로 특정한 상품을 이슬람 금융기관이 판매자로부터 구입하여 그 가격에 일정액을 더한 가격으로 차입자에게 재판매하는 구조이다. 금융기관의 경우 가격차이로 인한 마진을 이자 대용으로 지급받게 되며, 상품의 구매자의 경우 구매가격을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구입한 시점보다 늦게 지급할 수 있어 금융적인 의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우 주택 및 자동차 등 구입, 법인의 경우 기계 및 원재료 등 구입에 이 무라바하를 이용한다.

[그림 II-3] 무라바하 계약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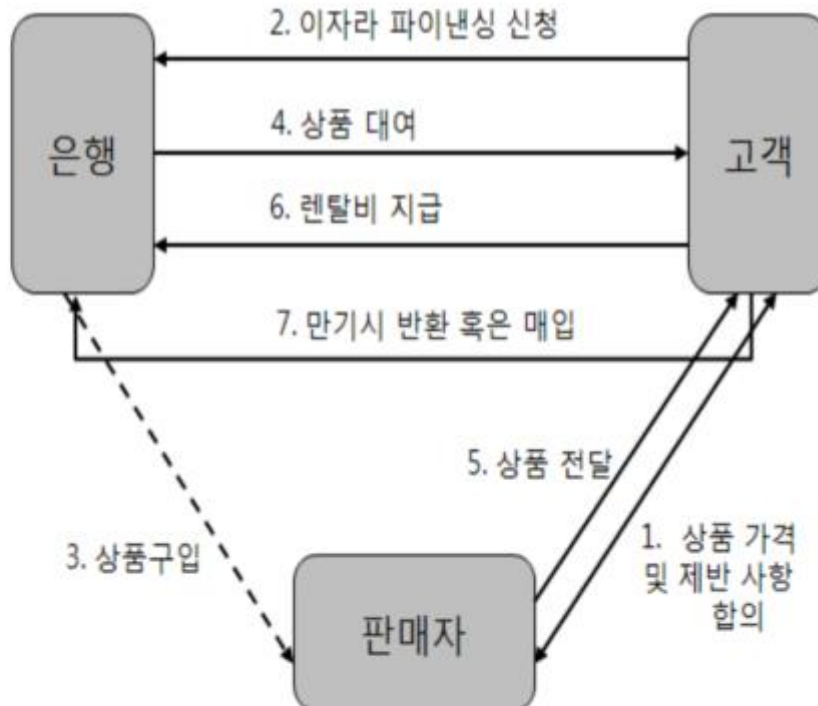
※ 출처: 김한수김보영. (2012). “이슬람금융의 현황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6) 김한수김보영. (2012). “이슬람금융의 현황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 Ijarah(이자라)

기존 금융의 리스 형태와 유사한 이자라는 리스 기반의 이슬람 금융 계약이다. 금융기관이 건물이나 설비 등을 구입하여 고객에게 사용권을 주고 계약 기간 동안 리스이용료를 받다가 계약이 끝난 시점에 건물이나 설비 등을 반환한다. 리스하는 건물, 설비 등의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보험료 등의 비용은 금융 기관이 부담한다. 이는 계약시에 사용권은 고객에게 있으나, 소유권은 금융 기관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자라 계약 형태 중에서도 Ijara Wa Iqtina(이자라와이크티나) 형태가 주로 이용되는데, 이자라와이크티나는 계약기간 이후 해당 건물 및 설비등의 물건을 사전에 합의한 가격으로 고객이 구매할 수 있다.

[그림 II-4] 이자라 계약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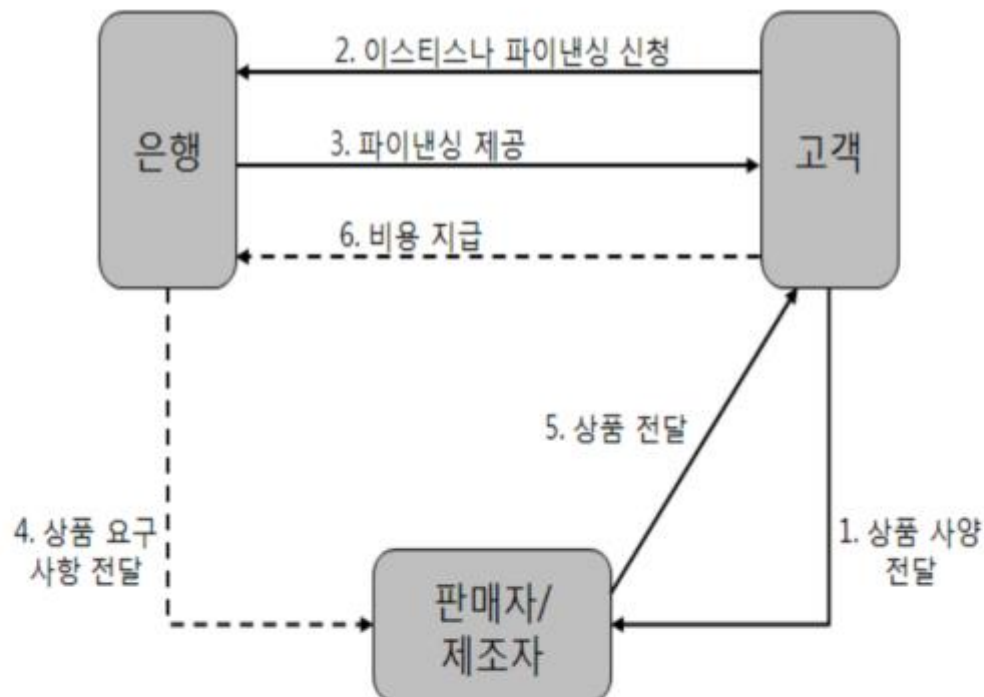


※ 출처: 김한수김보영. (2012). “이슬람금융의 현황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3) Istisna(이스티스나)

이스티스나는 합의된 가격으로 사전에 결정된 미래의 시점에 상품 또는 자산을 인도하기로 자금 제공 당사자가 동의하는 교환 계약의 형태이다. 이 계약은 이슬람 금융기관에서 항공기, 선박, 기계장비 등의 제조활동 뿐 아니라 건물, 창고, 쇼핑몰 등 부동산 관련 건설을 위한 파이낸싱에 널리 사용된다. 이스티스나는 제조 또는 건설될 상품 또는 자산의 미래의 인도를 위한 계약에 기초하여, 채무자는 정해진 기일에 상품 또는 자산을 인도한다. 제조 또는 건설업자가 제조 또는 건설에 들어가는 원자재를 보유한 상태에서만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주로 이자라와 결합한 형태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이용된다.

[그림 II-5] 이스티스나 계약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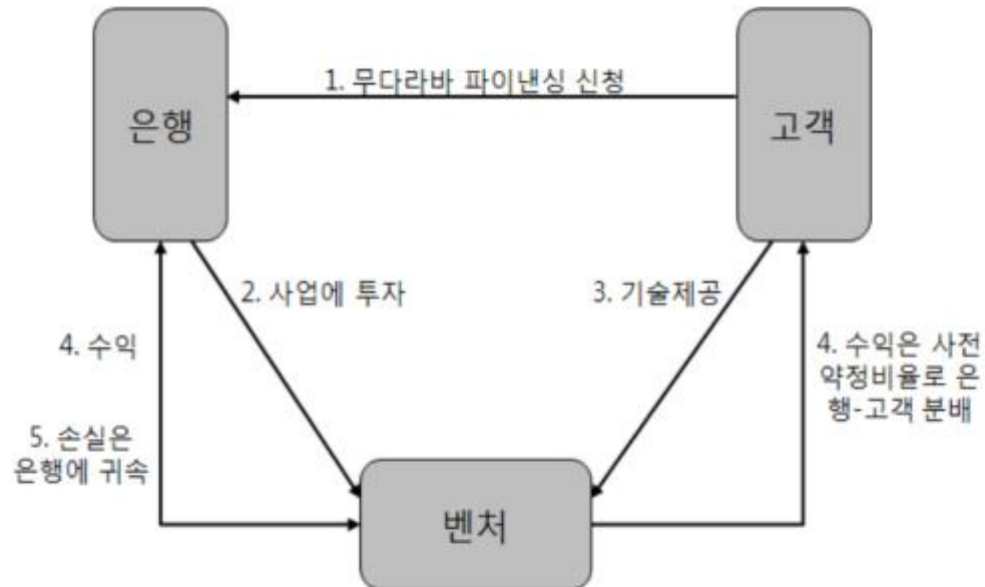


※ 출처: 김한수김보영. (2012). “이슬람금융의 현황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4) Mudarabah(무다라바)

Profit-sharing 형태인 무다라바는 무샤라카와 함께 기존 금융의 신탁금융과 비슷한 형태로서, 은행이 파트너로서 어떠한 사업에 공동으로 투자하는 지분형 파트너십 계약 구조이다. 자본제공자는 사업에 들어가는 자본만을 제공하며, 사업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사업가에게 일임한다. 자본제공자는 무다라바 계약시 정한 분배율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된다. 만약 사업에 적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가가 아닌 자본제공자가 모든 금전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그림 II-6] 무다라바 계약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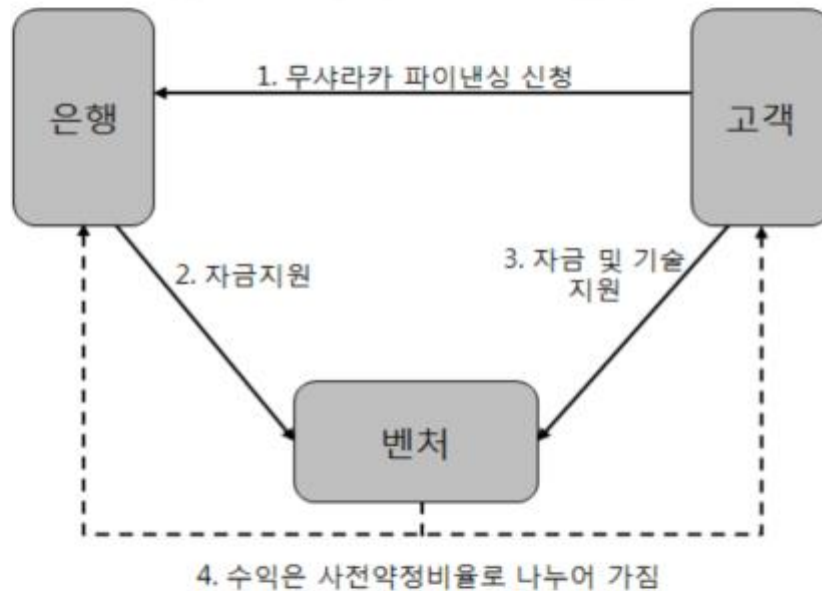


※ 출처: 김한수김보영. (2012). “이슬람금융의 현황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5) Musharakah(무샤라카)

무샤라카 역시 은행이 파트너로서 어떠한 사업에 공동으로 투자하는 지분형 파트너십 계약 구조로 자본제공자와 사업가가 자본 제공과 경영을 공동으로 하게 된다. 이익에 따른 배당 및 경영 참여 등은 계약한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무다라바와는 다르게 사업 실패에 따른 손실을 사업가와 경영자가 함께 부담하는데 보통 출자한 비율에 따라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보통 경영자는 자금 출자보다는 동산, 부동산, 기술 등 현물 출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림 II-7] 무샤라카 계약의 구조



※ 출처: 김한수김보영. (2012). “이슬람금융의 현황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표 II-1] 이슬람 금융 관련 용어

<i>Bai'</i>	A 'sale' or contract of sale. It sometimes precedes another term used to denote various sales-based modes of Islamic finance such as Murabahah, Istisna' and Salam.
<i>Bai' Bithaman Ajil</i> (BBA) or cost plus profit margin financing contract	A sale where payment of the consideration is deferred, either in instalments over a specified period or in full on a specified date. It is commonly used in long-term mortgage loans on which the homeowner pays instalments for typically 10, 20 or more years.
<i>Bai Al-Inah</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contract of sale and purchase of an asset whereby the seller sells to the buyer in cash and subsequently buys back the asset at a marked up deferred price; • A contract of sale and purchase of an asset whereby the seller sells to the buyer at a deferred price and subsequently buys back at a lower cash price.
<i>Gharar</i> (Uncertainty)	An element of a contract which is unknown, uncertain, ambiguous or deceit. For example, sale of birds in the sky, short-selling.
<i>Halal</i>	Permissible. That is neither prohibited (haram) nor of doubtful permissibility (shubhah).
<i>Haram</i>	Prohibited. Examples of activities prohibited in Islam include the sale and consumption of pork and pork-related products, pornography and fornication, gambling and intoxicants. Some jurisdictions also extend the prohibition to the sale of tobacco and/or armaments.
<i>Hilwalah</i>	Transferring a debt from one debtor (transferor) to another (transferee). Once the transferee has accepted the transfer of the debt, the transferor would be released from any obligation.
<i>Ibra'</i>	Rebate.
<i>Ijarah</i> (Leasing)	A contract whereby the lessor transfers to the lessee in return for a payment or series of payments the usufruct of an <i>Ijarah</i> item for an agreed <i>Ijarah</i> period, with terms mutually agreed by the contracting parties.
<i>Ijarah Thumma Al Bai'</i> (also called <i>Ijarah Walqfina</i>)	An <i>Ijarah</i> contract with an undertaking by the lessor to sell the <i>Ijarah</i> item to the lessee and/or an undertaking by the lessee to purchase the <i>Ijarah</i> item by, or at the end of the <i>Ijarah</i> period. [<i>Ijarah</i> = lease; <i>thumma</i> = then; <i>al Bai'</i> = a sale]
<i>Ijarah Muntahia Bittamleek</i> (Financial Leases)	An <i>Ijarah</i> or equivalent to a hire-purchase contract accompanied with an arrangement to transfer the <i>Ijarah</i> item from the lessor to the lessee through either a gift or a sale by, at the end of the <i>Ijarah</i> period. [<i>Ijarah</i> means lease; <i>muntahia</i> refers to as ending whereas <i>Bittamleek</i> means with ownership]

<i>Istisna'</i> (manufacture-sale)	A sale in which the subject is an item that has yet to be fabricated, manufactured, or constructed. Delivery of the item takes place at a future predetermined date. The consideration may be paid before, at or after delivery, or based on the stage of completion.
<i>Ju'alah</i>	An open promise by one party to pay whoever performs a particular task. It is a unilateral binding on the initiator.
<i>Kafalah</i>	To add obligation [of the guarantor] to the obligation of the principal debtor in respect to the demand for something [debt; compensation]. For example: If someone has a debt, another person is wishing to give guarantee of the debt; the first person is called "asil" (the principal debtor) and the second person is called "kafil" (guarantor).
<i>Maysir</i> (Gambling)	All dealings where placement of bet is required. Involves an arrangement between 2 or more parties, where a loss for one means a gain for the other. For example, gambling and games of chance.
<i>Mudarabah</i> (profit sharing)	A form of partnership between a party which contributes capital (rabb al-mal i.e. capital provider) and another which contributes effort, managerial and/or entrepreneurial skills (mudarib i.e. manager/entrepreneur). Profit from the outcome of the venture is shared between the capital provider and manager/ entrepreneur according to a mutually agreed profit sharing ratio, while losses are borne solely by the capital provider, provided such loss is not due to the manager's/ entrepreneur's negligence or violation of specified conditions.
<i>Murabahah</i> financing contract	A sale based on trust, in which the seller must disclose to the purchaser the mark-up on the item sold. The consideration may be paid either in cash or deferred. It is similar to a BBA contract but for shorter-term financing. Payment can be made by lump sum or by instalment.
<i>Musharakah</i> (Joint venture)	A form of partnership where partners contribute capital in cash or in kind, and share profits according to an agreed profit-sharing ratio, while losses are shared according to the capital contribution ratio.
Operating lease	A lease contract which the lessee does not have the intention to own the asset.
<i>Qard Hasan</i>	A benevolent "interest-free" loan in conventional finance. In Shariah, a borrower is obligated to repay only the principal amount of a loan and the lender is not entitled to demand any return over and above the principal. For example, a borrower takes a loan of say RM100 and repays the lender on maturity exactly the same amount of RM100 without an increment.

<i>Rahnu</i> (pawnbroking)	A possession offered as security for a debt so that the debt will be paid from them in case the debtor failed to pay back the debt. Other names: pledge, mortgage, pawn, collateral but with Shariah rulings.
<i>Riba'</i> (Interest)	Covers any return of money on money, whether the interest is fixed or floating, simple or compounded and at whatever rate. Such gain is prohibited.
<i>Salam</i> (deferred delivery)	A sale in which payment is made immediately while goods are delivered at an agreed later date. It is equivalent to an advance payment. It was originally created to provide financing for farmers.
<i>Shariah</i>	Islamic laws derived from Al-Quran and As-Sunnah.
Special Purpose Vehicles (SPV)	A separate subsidiary company set up to contain investments. Such a company protects its assets secure if the parent company goes bankrupt.
<i>Sukuk</i> (Bond)	Financial instruments that serve much the same purpose as debt, but which are structured to avoid the payment of interest.
<i>Tabarru'</i>	Donation, gift or contribution.
<i>Takaful</i> (Insurance)	An arrangement under which participants agree to contribute to a fund, where sums from the fund would be disbursed to participants or their beneficiaries on the concurrence of pre-agreed events.
<i>Wakalah</i>	A contract between an agent and principal. In most circumstances, the agent would be entitled to be paid <i>ujrah</i> (fee) for his services rendered.
<i>Zakat</i>	Obligatory contribution assessed based on certain assets owned by a Muslim that satisfy certain conditions and is to be distributed to specified categories of beneficiaries.

※ 출처: Malaysian Institute of Accountants(MIA).

2 이슬람 금융의 세계적 추이

1) 글로벌 이슬람 금융

이슬람 금융은 단지 이슬람교도들을 위한 종교 은행(Religion banking)이 아니라, 이슬람교도가 아닌 고객들에 대한 더 큰 이해와 수용으로 인해 금융 산업에서 하나의 큰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세계적으로 이슬람 금융은 그 규모가 2006년 500억 달러에서 2017년 3,190달러 규모로 6배나 성장했으며, 지난 10년간 11%대의 두 자릿수 성장을 해왔다. 영국, 필리핀, 독일 등 비이슬람 국가에서도 성장 중이며, 현재 33개국이 이슬람 금융을 도입, 운영하는 등 세계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⁷⁾

자생적이고 이슬람 금융국 내에 국한되었던 이슬람 금융에 대한 수요 때문에 이슬람 금융은 주로 전통적인 금융 업계를 위해 설계된 법률에 따라 규제되었으나, 이후 이슬람 금융에 대한 규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초창기 이슬람 금융 규정들은 주로 국내 기관에만 적용 되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국가 간의 거래와 세계적인 이슬람 금융 표준을 다루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견인을 받기 시작했다. 샤리아 준수 은행 시스템에 주로 초점을 둔 1970년대의 초창기 이슬람 금융은 오늘날 Sukuk채권, 이슬람 주식, 이슬람 투자 펀드, 이슬람 보험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말레이시아와 GCC(걸프협력회의)국가와 같은 기존의 주요 이슬람 금융 시장이외에도 터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와 같은 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케냐,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이지리아와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이슬람 금융 산업의 성장이 이루어졌다. 또한, 영국, 홍콩, 싱가포르,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 이슬람 금융 활동이 활발해졌다. 현재, 자산 규모에 따른 최고의 이슬람 금융 시장은 말레이시아와 사우디 아라비아이며, 이슬람 기금에서는 저지, 룩셈부르크, 미국 등 주요 금

7) 복덕규. (2017).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성장은 계속된다". Kotra해외시장뉴스.

용 센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09년에서 2014년 사이에 이슬람 금융은 투자자 및 발행 기관의 기반 확대, 산업 인프라 및 국가간 활동 확대 등 더 깊고 포괄적인 산업으로 확대 발전되었다.

이와 같이, 글로벌 이슬람 금융 산업은 점차 국제 경제 및 금융 연계를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슬람 금융 산업은 국가간 무역 금융, 국가 인프라 및 개발 프로젝트, 국제 할랄 무역 산업 지원 뿐 아니라 해외 직접투자 및 포트폴리오 투자 촉진 등의 다양한 거래에 자금을 공급하는데 있어 활발히 성장하고 있다.⁸⁾

[그림 II-8] 글로벌 이슬람 금융 시장



※ 출처: AlfatakhAmir. (2017). "The emergence of Islamic Fin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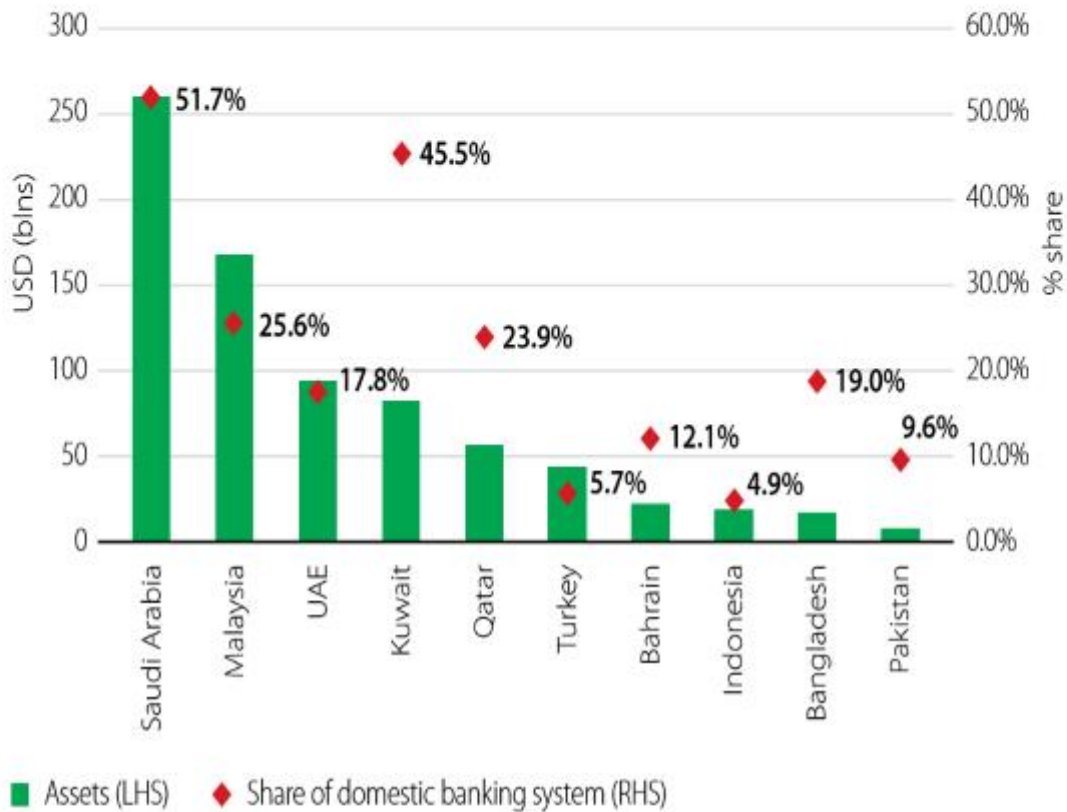
2) 글로벌 이슬람 금융의 발전

이슬람 금융 시장은 전통적인 금융 시장과 비교하여 시장 점유율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더욱 발달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같은 고성장 금융 시장은 이슬람 금융이 각각 국내 은행 시스템 자산의 52%와 45%를 차지하며 점차 주요 은행 부문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카타르,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가 각각 25%, 22%, 17%로 시장 점유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⁹⁾.

8) MGCC(Malaysian-German Chamber of Commerce). (2015). "The development of the Islamic finance industry."

9)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연간 보고서, KFH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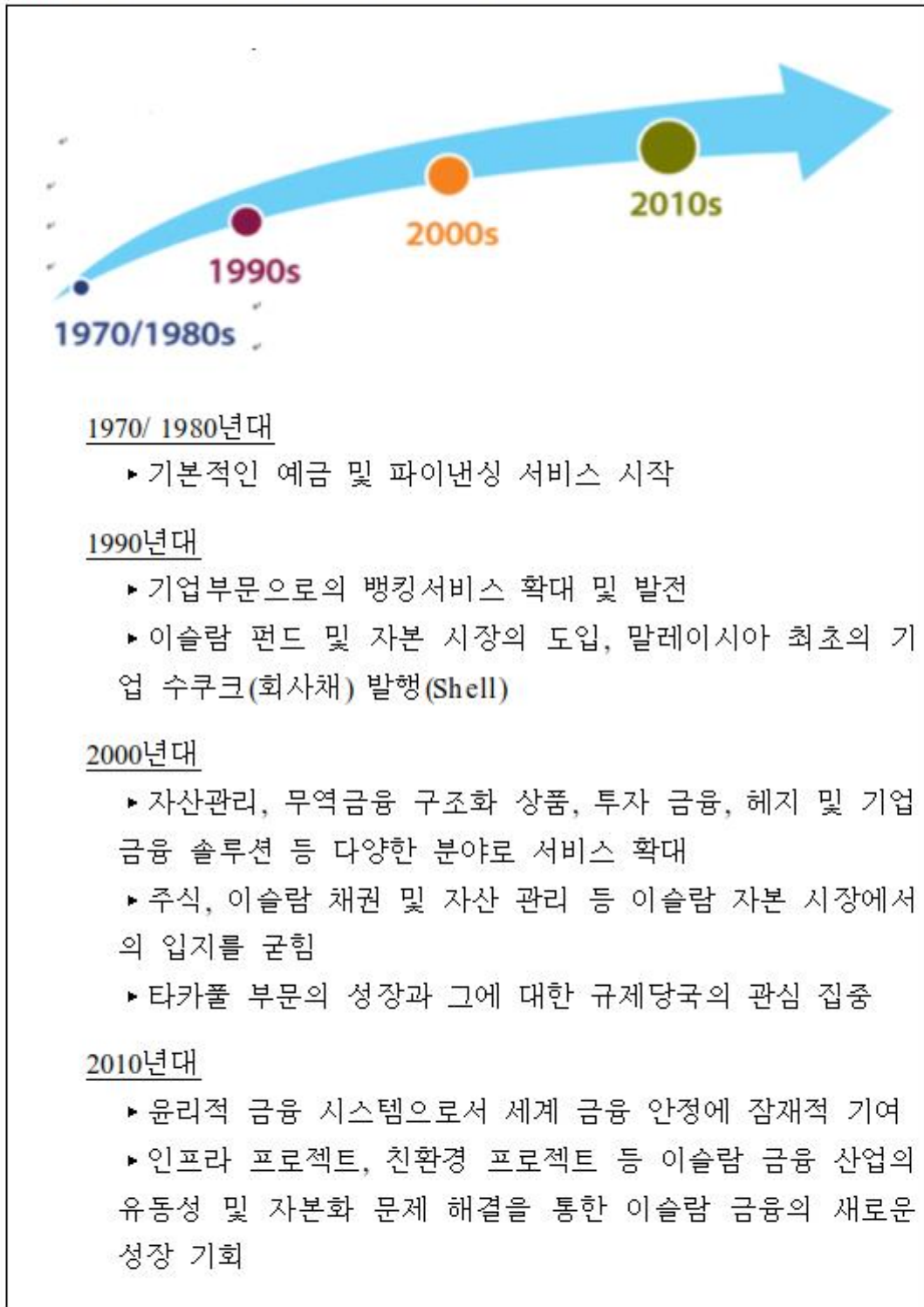
[그림 II-9] 주요 이슬람시장 금융자산(Assets share) 및 시장점유율(market share)
(2013년 말)



※ 출처: KFH Research

이슬람 금융은 시장 점유율에서 뿐만 아니라 그 상품의 다양성에서도 꾸준히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 1970년대 초기에는 주로 개인 및 소매 고객을 위한 기본적인 예금 및 파이낸싱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1990년대 점차 기업 부분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더 많은 금융 상품들로 확대되었다. 이후 2000년대에 더욱 큰 규모의 은행들과 명확해진 규정들이 생겨나면서 자산관리, 무역 파이낸싱, 구조화된 상품들과 수많은 새로운 이슬람 금융 상품들을 생산해내며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와 유사하게, 수쿠크, 펀드, 타카풀 같은 다른 주요 이슬람 금융 부문도 지난 십년동안 크게 확대되었다. 최근, 이슬람 은행을 포함한 이슬람 금융은 인프라 스폰서 및 환경친화적인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동원에 더 큰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슬람 금융의 유동성 관리 및 자본화에 대한 금융 산업의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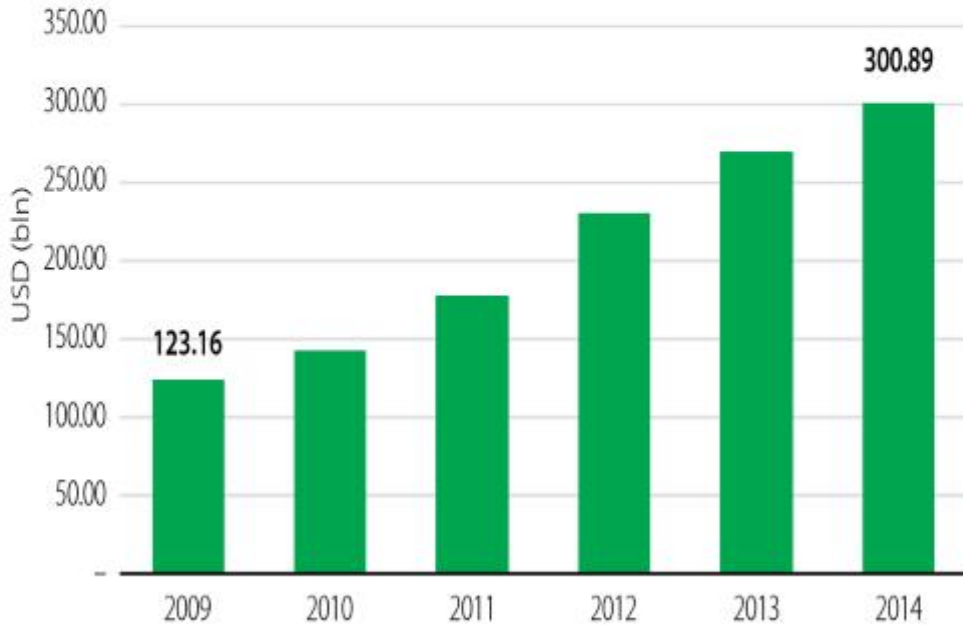
[그림 II-10] 이슬람 금융의 혁신과 발전



※ 출처: Malaysia International Islamic Financial Centre(MIFC)

10) MIFC(Malaysia International Islamic Financial Centre). (2014). "Innovations drive expansion of global: Islamic finance industry." MIFC, France."

[그림 II-11] 글로벌 수쿠크 시장(2009- 2014)



※ 출처: Malaysian-German Chamber of Commerce(MGCC)

이슬람 금융 산업에서 수쿠크 부분의 발달은 두드러졌다. 글로벌 수쿠크 시장은 전반적으로 그 입지를 넓혀가고 있으며, 점점 더 매력적인 자금 조달 수단으로 자리 매김 하고 있다. 2014년 19개국이 수쿠크를 발행하였으며, 2009년 10개국에서 5년만에 두배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 세네갈, 홍콩 및 룩셈부르크를 포함한 새로운 시장에서의 성공에 힘입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으로 수쿠크 시장은 2009년 123억2천만달러에서 2014년 말 3,000억 달러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3) 이슬람 금융의 발전 요인

(1) 증가하는 무슬림 인구와 생활수준의 향상

전세계 무슬림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생활 수준의 향상은 전통적인 방식의 자금 조달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슬람 금융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다. 또한, 중동과 아시아의 무슬림 투자자

들은 종교적인 신념과 일치하는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슬림 중 절반은 기존의 금융 서비스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이슬람 금융 서비스가 대안으로 제시된다면 이슬람 금융 서비스를 선택할 것이라고 응답했다.¹¹⁾

(2) 이슬람 금융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

석유 및 원자재 생산국의 거대한 유동성을 활용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투자를 늘리는 한편 지속가능한 기금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이 이슬람 금융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이슬람 금융 상품의 윤리적인 성격과 재정적인 안정성

이슬람 금융 상품은 주류 및 도박에 대한 투자 금지 등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윤리적 의식을 가진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다가간다. 또한 세계적 금융 안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전통적인 금융 시장에 대한 대안 형태로서의 이슬람 금융 시장이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다양한 다자기구들이 실행가능한 전통적 금융시스템에 대한 대안 시스템으로서의 이슬람 금융에 대하여 광범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11) AlfatakhAmir. (2017). "The emergence of Islamic Finanace."

1) 아시아의 이슬람 금융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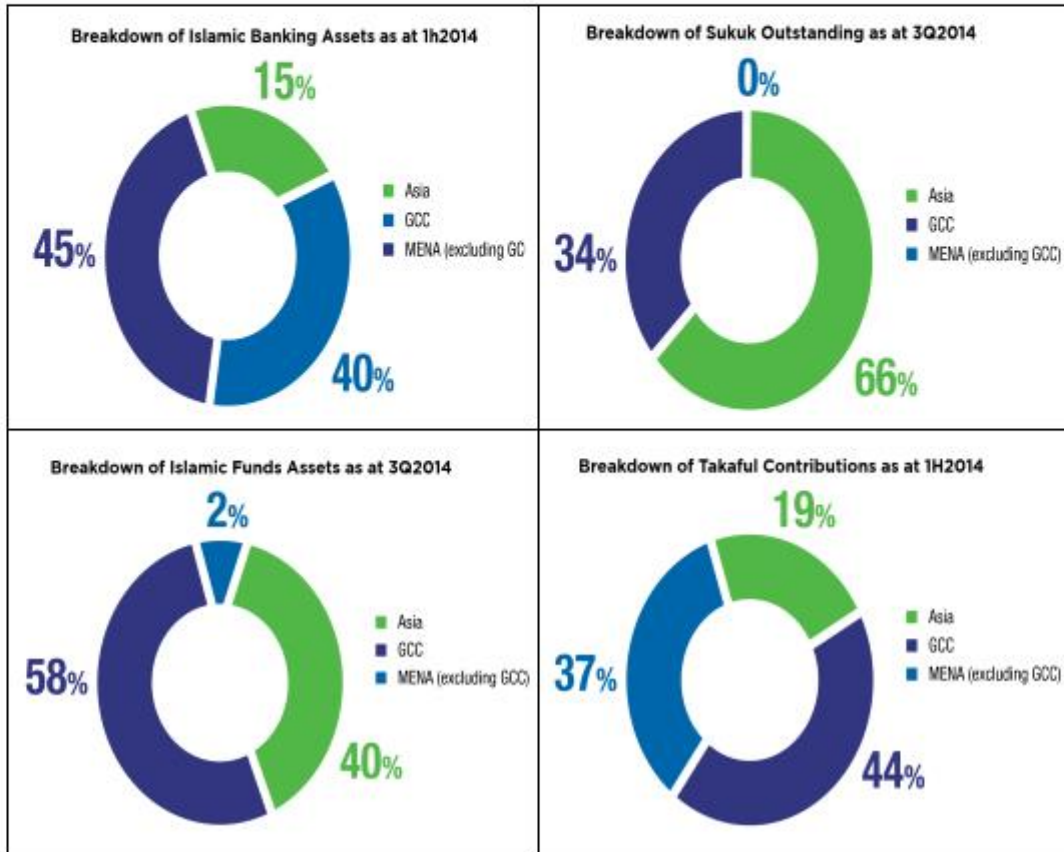
불과 40여년만에 이슬람 금융 시스템은 은행, 자본 시장, 보험 부문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자체 금융 시스템으로 진화했다.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이슬람 금융 업계는 17.3%의 연평균 복합 성장률(Compounded Annual Growth Rate)을 기록하면서 급속히 성장했다. 지리적인 영향으로 인해 GCC(Gulf Cooperation Council)국가와 아시아 중에서도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과 같은 신흥시장으로의 성장이 집중되었다.

아시아 경제는 세계 경제와 이슬람 금융 시스템의 중추적인 부분으로 세계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아시아의 이슬람 금융 환경은 최근 수 년 동안 아시아의 견실한 성장 궤적을 이끌어 낸 이슬람 बैं킹 및 수쿠크 부문이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산관리 및 타카플 부문에서도 향후 잠재적인 성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¹²⁾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 같은 이슬람 국가들에서 아시아의 이슬람 금융 성장전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며, 강한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이슬람 국가가 아닌 싱가포르, 홍콩, 일본과 같은 역동적인 경제 지역과 중국과 인도 같은 인구가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도 이슬람 금융에 대한 관심과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12) KFH Research Ltd. (2013). "Islamic Finance In Asia: Development, Growth and Opportunities ."

[그림 II-12] 2014년 아시아를 포함한 글로벌 이슬람 금융 시장



※ 출처: Bank Negara Malaysia(말레이시아 중앙은행)

2014년 상반기에 MENA(Middle East와 North Africa의 합성어)이 이슬람 बैं킹 자산 총액으로 선두를 차지 하였으나, 이슬람 펀드 및 타카풀 같은 다른 부문의 시장 규모면에서는 아시아가 GCC국가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며 이슬람 금융의 차기 리더로 성장했다¹³⁾. 이는 전세계 무슬림 인구의 60%이상이 아시아에 살고 있으며, 적극적인 정치적 지원, 대규모 투자자 및 세금 인센티브가 이슬람 금융의 차세대 리더의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동남아시아의 이슬람금융

아시아의 금융 위기 이후 지난 20여년간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금융

13) KFH Research Ltd. (2013). "Islamic Finance In Asia: Development, Growth and Opportunities."

기관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 자금과 자본 시장의 발전에 긍정적인 진보를 이루었다. 앞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슬람 금융의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서의 아시아의 노력에 점차 더 영향력있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특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와 같은 무슬림 국민들이 주를 이루는 국가들이 주요 이슬람 금융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2020년까지 이슬람 금융 자산이 총 은행 부문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250만명 인구의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금융 부문이 2011년에서 2015년까지 5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¹⁴⁾. 또한, 브루나이의 경우 일찌감치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여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글로벌 이슬람 금융의 중심지로서의 틈새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¹⁵⁾

동남아시아 지역의 엄청난 인프라 투자 수요(2022년까지 연간 약 6십억 달러 수요)는 이 지역의 수쿠크 발행의 폭발적인 증가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말레이시아는 세계 이슬람 채무 시장의 거의 2/3에 해당하는 한편, 인도네시아는 2014년 Wakalah-structure 수쿠크를 발행하고 2015년 5월 최대규모의 single-tranche USD 수쿠크를 발행하는 등 글로벌 수쿠크 발행에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웠다.¹⁶⁾ 또한, 인도네시아의 2015년 예산에서, 정부는 수쿠크 발행을 통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상당한 액수를 할당했다. 한편, 브루나이의 금융 통화위원회(Authority Monetary Brunei Darussalam)는 2013년 0.16%의 임대료로 12억2천5백만달러를 벌어들인 82번째의 성공적인 수쿠크 발행을 발표했다.¹⁷⁾ 또한, 수쿠크 발행 기업들도 공장 및 부동산 부문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쿠크 시장을 적극 활용해 왔다.

태국과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슬람 금융 서비

14) IFSB(Islamic Financial Services Board).(2015). "Islamic Financial Services Industry Stability Report."

15) Asia Briefing. (2014년 7월 23일). "Asia: the Future of Islamic Finance?" Asia Briefing: <http://www.asiabriefing.com/news/2014/07/asia-future-islamic-finance/>에서 검색됨

16) Oxford business group. (2013). "Brunei Darussalam: Islamic banking earmarked for further growth."

17) The Star Online. (2014). "Malaysia remains leading sukuk issuer."

스에 대한 요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싱가포르와 같은 개발국에서도 이슬람 금융 체제를 더욱 강화할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자산은 2010년 이후 73% 성장했으며, 국경을 넘는 이슬람 금융을 보여주고 있다.¹⁸⁾ 싱가포르 금융청(MAS/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의 2009년 수쿠크 시설 설립이래 2009년부터 5년간 31건의 수쿠크가 발행되었으며, 총 발행 금액은 2009년 3억1500만 달러 규모에서 2014년 27억3000만 달러 규모로 증가하였다.¹⁹⁾ MAS는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업계 및 다른 정부기관들과 협력하여 수쿠크에 대한 제도 및 조세제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그외 아시아지역의 이슬람금융

동남아시아 지역 뿐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이슬람 금융 발전에 있어 점차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스카이라인과 천연 항구로 유명한 홍콩은 중국과 중동 사이의 국제 금융 중개 중심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시장과 함께 홍콩은 인민폐를 이슬람 금융 업계로 끌어들이 수 있는 이상적인 출입구로 자리잡고 있다. 중국 기업들을 위한 샤리아 금융 허브가 되겠다는 목표를 밝히는 동시에 최근 두번째 수쿠크 발행을 발표했다.²⁰⁾ 홍콩 금융관리국(Hong Kong Monetary Authority)은 만기 5년 미국달러화 표시 10억달러 수쿠크를 발행했다. 이에 120여개의 투자기관으로부터 47억달러 규모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이는 수쿠크 발행금액의 4.7배에 달한다고 발표했다.²¹⁾ 또한, 홍콩은 수쿠크 발행을 위해 세법을 개정하여, 수쿠크와 기존의 금융 사이의 공평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국 또한 홍콩이 수쿠크 채권을 발행한 이후, 병원에서부터 전철역

18) Oxford business group. (2013). "Brunei Darussalam: Islamic banking earmarked for further growth."

19) Jacqueline Loh. (2015). "Enhancing linkages between Asia and the Middle East"

20) Jacqueline Loh. (2015). "Enhancing linkages between Asia and the Middle East"

21) South China Morning Post. (2015). "Hong Kong government sells second Islamic sukuk bond to raise USD1.1 bln."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젝트에 이슬람 금융을 적용하려 하고 있다. 특히 인구 650만명 중 1/3이 무슬림인 중국 북서부 지역인 닝샤(Ningxia)는 15억 달러 규모의 수쿠크의 판매를 계획중이다.²²⁾

또다른 아시아의 경제 강국인 인도도 이슬람 금융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봄베이 증권거래소(Bombay Stock Exchange)는 2013년 S&P BSE 500 Shariah Index라고 불리는 Islamic-focused Index를 개시한 인도 최초의 증권 거래소가 되었다.²³⁾ 이 샤리아 인덱스는 전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지수들 목록에 합류하면서, S&P 다우 존스와 BSE가 전략적인 파트너쉽을 발표한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인덱스가 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일본과 한국같은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이슬람 금융은 그 입지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말레이시아와 같은 주요 이슬람 금융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일본 당국은 일본 기업들, 금융 기관 및 투자자들이 말레이시아와의 이슬람 금융 관련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또한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금융 분야에서의 기술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²⁴⁾ 또한, 일본은 1억달러 규모의 알-이자라(al-ijalah) 수쿠크 발행 뿐 아니라, 5천만달러 규모에서 7천만달러 규모로 대형화된 무라바하(Murabahah) 시설의 설립과 함께 이슬람 금융에 대한 수요에 발맞춰 이슬람 금융 헤드라인을 만들었다. 이슬람 금융 지원을 위한 금융 제도 또한 개정하고 있다.²⁵⁾

아시아 전역의 규제 당국들이 성장하는 이슬람 금융 산업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면서, 한국의 중앙은행 또한 이슬람 금융의 주요 표준 제정기구 중 하나인 이슬람 금융 감독 위원회(IFSB/Islamic Financial Services Board)가입하면서, 이슬람 금융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²⁶⁾

22) Gulf News Markets. (2015). "Hong Kong Sharia Finance Goals Elusive as Second Sukuk Readied."

23) Bloomberg Business. (2015). "China Readies for Islamic Finance With a Little Help from Gulf."

24) India Briefing. (2013). "Bombay Stock Exchange Launches Shariah Index."

25) Channel NewsAsia. (2015). "Malaysia, Japan to enhance cooperation in Islamic finance."

Ⅲ.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

1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의 역사

말레이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금융 시장 중 하나이며, 말레이시아 당국은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은 1963년 Haji(메카로의 성지 순례)를 수행하는 이슬람교도들의 Haji를 위한 저축예금을 위해 Perbadanan Wang Simpanan Bakal Bakal Haji라는 기관이 설립되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 기관은 후에 Pejabat Urusan Haji와 합병되어 현재 Lembaga Tabung Haji (Haji Fund Board)로 알려진 Lembaga Urusan dan Tabung Haji이 되었다. 이후 1983년 말레이시아 최초의 이슬람 전업은행인 Bank Islam Malaysia Berhad이 설립되었다. 십여년 후, 이슬람 बैं킹 제도(Islamic Banking Scheme, IBS)하에 상업 은행 및 금융기관들은 이슬람 बैं킹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2004년부터는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 시스템이 더욱 자유화되었고, 은행 그룹들은 이슬람 상업 은행들의 자회사 설립을 권유받아 외국 자본의 투자를 포함한 더 많은 이슬람 금융 기관의 설립을 초래했다.

2014년 이슬람 금융 부문은 말레이시아 전체 은행 시스템 총자산 중 25.6%를 차지하여, 12%의 성장율을 나타냈다. 2014년 이슬람 금융 자산은 6,122억 링깃으로 2010년 3,512억 링깃 대비 거의 두배로 증가하였다. 외환 자산도 이슬람 금융에서의 국가간 거래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277억 링깃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슬람 금융 업계는 연 평균 10~15%의 성장률을 나타내며 꾸준히 성장해왔다.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외국 소유 금융기관, 이슬람 자회사를 설립한 기존 금융기관, 외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 상당수의 전업 이슬람 금융기관들이 있다.²⁷⁾

26) Nortonrose Fullbright. (2010). "A new era for Islamic finance in Asia Pacific."

27) Reuters. (2014). "Bank of Korea joins Islamic finance body IFSB."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 기관²⁸⁾

1. Affin Islamic Bank
2. Al Rajhi Banking & Investment Corp
3. Alliance Islamic Bank
4. Amlslamic Bank
5. Asian Finance Bank
6. Bank Islam
7. Bank Muamalat
8. CIMB Islamic
9. HSBC Amanah
10. Hong Leong Islamic Bank
11. Kuwait Finance House
12. Maybank Islamic
13. OCBC Al Amin
14. Public Islamic Bank
15. RHB Islamic Bank
16. Standard Chartered Saadiq

말레이시아는 지난 10년간 50%이상의 글로벌 수쿠크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UAE, 바레인과 함께 이슬람 금융 분야의 전반적인 시장 리더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²⁹⁾ 이슬람 금융 부문에 있어서 말레이시아의 경쟁 우위는 규제 변경, 세제 지원 및 교육 자원 확대 등 강력한 정부의 지원이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처럼 강력한 지원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까지의 이슬람 금융 산업의 목표를 설정했다. 2009년도 8%였던 이슬람 금융 자산의 글로벌 점유율을 2020년까지 13%로 증가시키는 것, 2009년 11%였던 글로벌 타카풀 점유율을 20%로 증가시키는 것과 2010년 29%였던 말레이시아 내 이슬람 파이낸싱의 비중을 40%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기관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이 2020년까지 자산규모로 세계 10대 금융 기관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목

표를 설정했다.³⁰⁾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금융의 허브로서의 지위를 꾸준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III-1]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 역사와 발전

시기	내용
1단계 1983 - 1992 이슬람금융 기본 환경 구축	- 이슬람은행법(1983년), 타카풀법(1984년)을 제정하여 이슬람금융기관 설립 - 1983년, 최초의 이슬람전업은행 Bank Islam Malaysia Berhad 설립 - 1985년, 최초의 타카풀사 Syarikat Takaful Malaysia Berhad 설립 - 1990년, 외국기업 최초로 Shell 사가 말레이시아에서 수쿱 발행
2단계 1993 - 2000 이슬람금융기관 확대 및 인프라 구축 확대	- 1993년, 기존 전통적은행에 이슬람원도우 은행 설립을 허용 - 1994년, 이슬람 단기자금중개 시장 Islamic Inter-bank Money Market(IIMM) 설립 - 1996년, 이슬람 원도우은행에 대한 재무제표, 공시 등 감독 기준 마련 - 1997년, 샤리아자문위원회(Shariah Advisor Council; SAC)를 설립하여 샤리아 해석을 표준화
3단계 2001년 이후 - 이슬람금융 국제화 및 글로벌이슬람금융 허 브 구축 (금융센터 마스터플 랜 2001.3)	- 2001년, 말레이시아 정부는 최초로 수쿱 국채 발행 - 2002년, 이슬람 금융 규제감독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만드는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Islamic Financial Services Boards)가 설립을 주도 (말레이시아 소재) - 2003년, 외자은행의 이슬람 은행 면허취득 허가 - 2005년, 수쿱에 대해 거래상 발생하는 이중금융기관을 자유화하여 외국 은행에게 이슬람은행 과세 면제 - 2006년 국제 이슬람금융센터 설립(MIFC) - 2008년, 이슬람교육센터(INCEIF), 샤리아연구센터(ISRA) 설립

※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3). “해외 주요국 이슬람 금융 도입현황 및 시사점”

이슬람 금융 부문의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제시한 2001년 금융 부문 마스터플랜 시행 이후,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 환경은 말레이시아 경제의 변화하는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힘을 얻었다. 도전적인 경제 환경 속에서도 이슬람 बैं킹 및 타카풀 금융기관들은 재무 건전성과 탄력성을 유지해왔다.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 산업의 총 자산은 2016년 에도 8.3% 증가하여 전체 은행 시스템의 28%를 차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타카풀 부문 또한 2016년 총 75억링깃(약 19억 USD)으로 전체 산업의 14.6%를 차지함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줬다.³¹⁾

이러한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 산업의 급속한 성장 배경 중의 하나로 이슬람권에서의 높은 위상을 들 수 있다.³²⁾ 말레이시아는 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OIC)의 회원국으로, OIC에는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이 포함되어 있다. 이 OIC내에서 57개국 정상이 모두 참여하는 이슬람 정상 회의(Islamic Summit Conference)에서 의장직을 맡는 등 말레이시아의 높은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국가신용등급이 이슬람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안정적인 경제 운용과 정치 환경, 일관적인 정부 정책 등으로 이슬람권에서 앞서고 있다.

또다른 성장 배경으로는 지정학적인 이점을 들 수 있다.³³⁾ 말레이시아는 중국, 인도 등 신흥 경제국들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무슬림 인구가 2억명 이상인 인도네시아와 인접해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인 이점은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금융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31) AlfatakhAmir. (2017). "The emergence of Islamic Finance."

32) Bank Negara Malaysia(말레이시아중앙은행). (2016). "Financial Stability and Payment Systems Report 2016: Islamic Finance Development."

33) 나희량. (2011). "말레이시아 이슬람금융: 소비자 선호체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원동력이 되고 있다.

또한, 이슬람 금융 상품 개발에 있어 샤리아에 대한 해석이 유연하게 이루어진다는 점도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 성장의 원인이 되고 있다.³⁴⁾ 말레이시아의 샤리아 해석은 수니파의 하나인 **Shafii**파의 견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Shafii**파는 다른 학파들보다 샤리아의 해석이 더 유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샤리아에 대한 유연한 해석은 말레이시아 내의 더 다양한 이슬람 금융 상품의 개발로 이어져,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금융 기법이 가장 발달한 나라로 부상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샤리아 해석에 있어서 통일성과 안정성이 유지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증권위원회 및 **Bank Negara Malaysia**(말레이시아 중앙 은행) 내부에 각각 샤리아 자문 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샤리아의 이슬람 금융과 관련된 샤리아 해석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이는 다른 이슬람 국가들이 샤리아 해석에 있어 개별적인 금융기관이나 이슬람 법학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가장 중요한 성장 배경으로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명확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그에 따른 이슬람 금융 환경 구축을 들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금융을 정책적, 제도적으로 지원, 육성하고 있다. 2001년 말레이시아 정부는 금융산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이 마스터플랜에서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금융의 허브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명시하고, 10년 이내에 금융시장에서 이슬람 금융의 점유율을 20%로 높이고 외국의 이슬람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우수한 이슬람 금융 전문 인력과 경영진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마스터플랜 이외에도 정부와 **Bank Negara Malaysia**는 다양한 세제 혜택, 샤리아에 맞는 법률의 개정, 이슬람 금융 전문 인력 육성 및 금융 상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왔다.³⁵⁾ 이러한 말레

34) 나희량. (2011). "말레이시아 이슬람금융: 소비자 선호체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35) 나희량. (2011). "말레이시아 이슬람금융: 소비자 선호체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이시아 정부의 정책은 지난 수십년 간의 이슬람적 현대화 전략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1970년대 이후 확산된 이슬람 부흥 운동은 이슬람정당의 정치 참여와 이슬람 정책에 대한 욕구 증대를 불러왔다. 이에 부응하여 1980년대 이후 정부 주도로 이슬람화 정책을 채택하고 이슬람적 현대화 전략이 시행된다. 이슬람 정책들 중에서도 이슬람 금융은 가장 성공적인 부문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하에 이슬람 금융 상품의 혁신, 전세계의 다양한 금융 기관들, 광범위한 혁신적인 이슬람 투자 기법, 글로벌 규제 및 법적인 모범 사례 등을 채택한 포괄적인 이슬람 금융 인프라가 탄생했다. 인프라 구축 뿐 아니라 이슬람 금융 인재의 확보를 위해 인적 자원 개발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말레이시아를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이슬람 금융 시장의 하나로 변화시켰다. 또한,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 산업의 빠른 자유화와 촉진적인 산업 환경은 외국 금융 기관들로 하여금 말레이시아를 이슬람 금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지로 만들었다. 이로 인해 다양하고 성장하는 지역 및 국제 금융 기관들이 탄생했다.

1)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 규정 및 감독

(1)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 규제 및 감독 기관³⁶⁾

전체적으로 말레이시아 금융기관들의 감독 기관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며, 다른 하나의 기관으로는 국가의 자본 시장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기관인 증권위원회 있다. 라부안역외금융서비스당국 또한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과 관련된 감독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① Bank Negara Malaysia(BNM)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1959년 말레이시아 중앙은행법(Central bank of Malaysia Act 1958)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Act 701로 알려진 새로운 중앙은행법(Central bank of Malaysia Act 2009)으로 개정되었다. 이 중앙은행법은 명시적인 위임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 위기의 신속하고 정리된 해결을 위한 간시의 강화, 선제 조치 및 확대된 권한 등 포괄적인 조항을 담고 있다. 또한, 중앙은행은 이 법률에 의거 규제되지 않은 단체들로부터 기인하는 위험을 막기 위해 적절한 개입을 취할 수 있다.

이슬람 금융과 관련된 내용은 이 법의 VII 부분에 명시되어 있으며, 중앙은행 법에 명시된 은행의 주요 목적은 말레이시아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통화적 재정적 안정성을 증진하는 것이다.

36) 나희량. (2011). "말레이시아 이슬람금융: 소비자 선호체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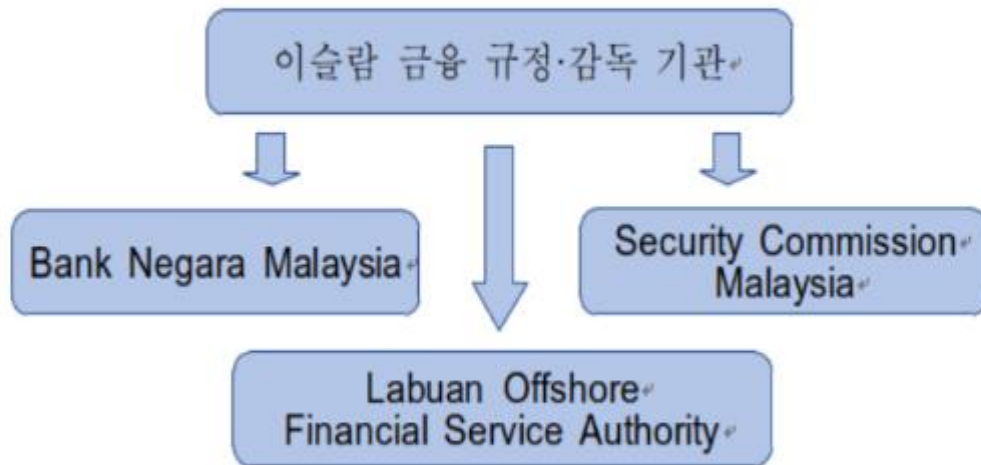
② Security Commission(증권위원회)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는 1993년 3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Security Commission Act 1993에 의해 운영된다. 이 기관은 조사 및 집행 권한을 가진 자체 자금 조달 기관으로, 말레이시아의 자본 시장을 규제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증권위원회는 말레이시아내의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규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 이외에도 법령에 따라 말레이시아의 증권 및 선물 시장의 발전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③ Labuan Offshor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LOFSA) 라부안역외 금융서비스당국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심에서 재정 인센티브 및 지원을 통해 국내 및 국제 비즈니스 및 투자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여겨진 라부안은 1990년 말레이시아의 역외 금융 센터로 지정되었으며, 1996년 관할 규제 기관으로서 Labuan Offshor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이 설립되었다. 이 기관은 Labuan International Business and Financial Centre (Labuan IBFC)의 개발 및 관리를 책임지는 법정 기관으로서 IBFC에서의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의 질서있는 수행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라이선스, 규제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Labuan IBFC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는 국제 비즈니스, 은행 업무, 보험 및 재보험, 자산 관리 및 캐피탈 분야 등의 기존 금융 업무와 샤리아를 기반으로한 이슬람 금융 업무를 포함한다.

[그림 III-1] 이슬람금융 규정·감독 기관 프레임워크



※ 출처: UAE Laws and Islamic Finance

(2) 이슬람 금융 관련 법률

① Islamic Banking(이슬람 은행) 관련 법률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최초의 법안은 이슬람 은행 업무를 관리하기 위한 **Islamic Banking Act 1983 (Act 276)**으로 1983년 4월 7일 발효되었다. 그 후, 이슬람 금융 산업의 성장과 그 필요성에 따라 6번 개정되었다. 말레이시아 내의 이슬람 은행과 그 활동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과 이 법률에 의해 규제·관리된다. 여기서 ‘이슬람 은행’이란 이슬람 은행 업무를 수행하고 유효한 면허를 소지한 모든 회사들을 의미한다. 그런 은행의 말레이시아 내의 모든 사무소 및 지점은 하나의 은행으로 간주된다. ‘이슬람 은행 업무’란 그 목적과 운영이 이슬람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어떠한 사항에도 연관되지 않는 은행 업무를 뜻한다. 이 법안은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교 사업에 대한 면허 및 규제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다.³⁷⁾

37) UAE Laws and Islamic Finance. (2012). "Laws and regu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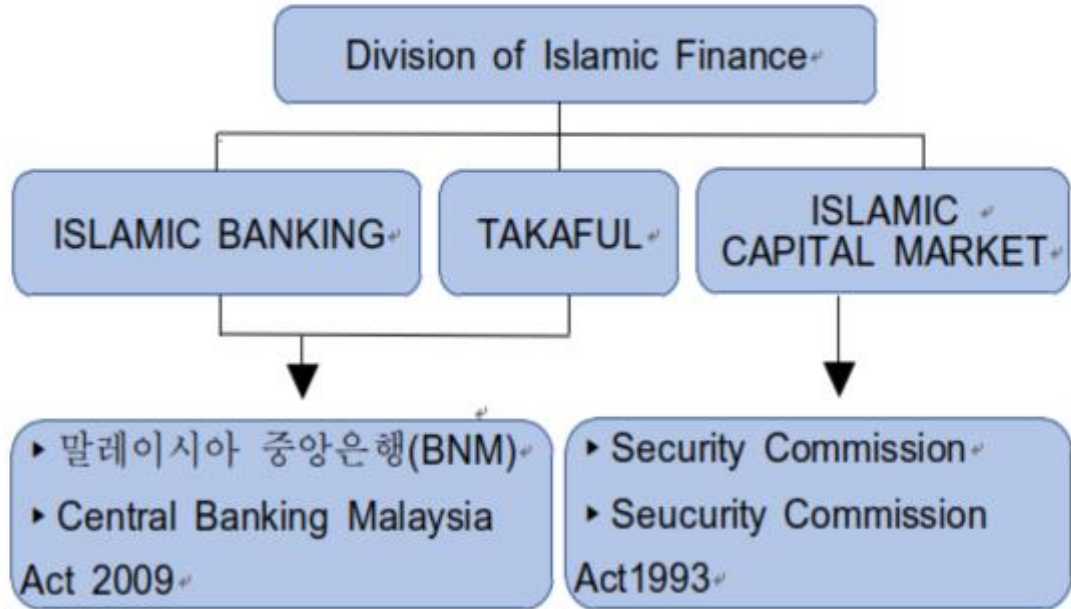
② Takaful(타카풀) 관련 법률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보험 사업, 즉 타카풀 사업은 Takaful Act 1984에 의해 규제된다. 이 법률은 말레이시아 내 타카풀 회사들의 면허 부여 및 운영을 허용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에 의해 통제된다.

③ Islamic Capital Market(이슬람 자본시장) 관련 법률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자본시장은 The Capital Markets and Services Act 2007에 의해 규제되며, 증권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이 법은 Securities Industry Act 1983, Futures Industry Act 1993 및 Securities Commission Act 1993 의 IV부분에 있는 자본 시장에 관한 세가지 주요 법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자본시장에 관한 활동, 시장 및 중개인들에 관련된 사항들과 그에대한 필연적이고 부수적인 사항들과 관련된다

[그림 III-2] Division of Islamic Finance



※ 출처: UAE Laws and Islamic Finance

(3)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노력

이슬람 금융의 허브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행한 2001년 마스터플랜 이후,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금융을 제도적·정책적으로 지원, 육성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꾸준한 제도적 노력은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금융의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서 아시아의 경제에 영향력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신호이다.

2013년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금융서비스법(IFSA 2013 /Islamic Financial Services Act 2013)를 제정하며, 이슬람 금융 업계에서 샤리아 관련 개발을 증진하는데 주력했다. 이슬람 금융서비스법은 이슬람 금융 산업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만약, 이슬람 금융 기관이 샤리아준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형사 및 민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슬람 금융서비스법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이슬람 금융 기관들의 책임 측면에서의 이슬람 예금과 이슬람 투자 상품 분류의 구분과 분리이다. 자산 측면에서, 이 법률은 금융 활동을 판매 기반, 자본 기반, 수수료 기반 계약으로 각 이슬람 계약들의 특징을 명

확히 구분한다. 여기에는 판매 기반의 *mudharabah*와 *ijarah*, 자본 기반의 *mudharabah*와 *musharakah* 및 수수료 기반 계약인 *wakalah* 와 *kafalah* 등이 있다.³⁸⁾

이슬람 금융서비스 법안과 함께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금융 및 타카풀 산업에서 지배적이면서 적용 가능한 거래 및 원칙들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샤리아 기준과 운영적인 요건들의 제시에 착수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이슬람 금융 기관간의 샤리아 준수 문화를 강화하고, 말레이시아의 샤리아 와 규제 체계를 강화하며, 샤리아 관련 문제에 관해 금융 기관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정비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슬람 금융에 대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주요 국제 및 국내 금융 기관들을 아우르는 활기차고 포괄적인 이슬람 금융 시스템을 지원하는 국제적인 이슬람 허브가 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말레이시아의 오래되고 진보적인 이슬람 금융 경험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말레이시아를 국제 이슬람 금융 중심지로 부상시키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와 규제 당국은 2006년 말레이시아 국제 이슬람 금융 센터(Malaysia International Islamic Financial Centre/ MIFC)를 설립하였다. MIFC 이니셔티브는 특히 말레이시아 금융 및 시장 감독 기관들의 공동 노력으로 MIFC의 개발 및 발전을 위해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³⁹⁾ 그 감독 기관들로는 Bank Negara Malaysia(말레이시아 중앙은행), Securities Commission(증권위원회), Labuan Offshor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라부안 금융 서비스국), Bursa Malaysia(증권거래소)가 있다. MIFC의 설립은 말레이시아를 이슬람 금융에 있어 광범위한 지식과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이슬람 금융의 핵심 글로벌 리더로 승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쿠크 등 금융 기법뿐만 아니라 이슬람 펀드 및 자산 관리 등의

38) UAE Laws and Islamic Finance. (2012). "Laws and regulation."

39) PWC(PRICEWATERHOUSECOOPERS). (2009). "My Islamic Fin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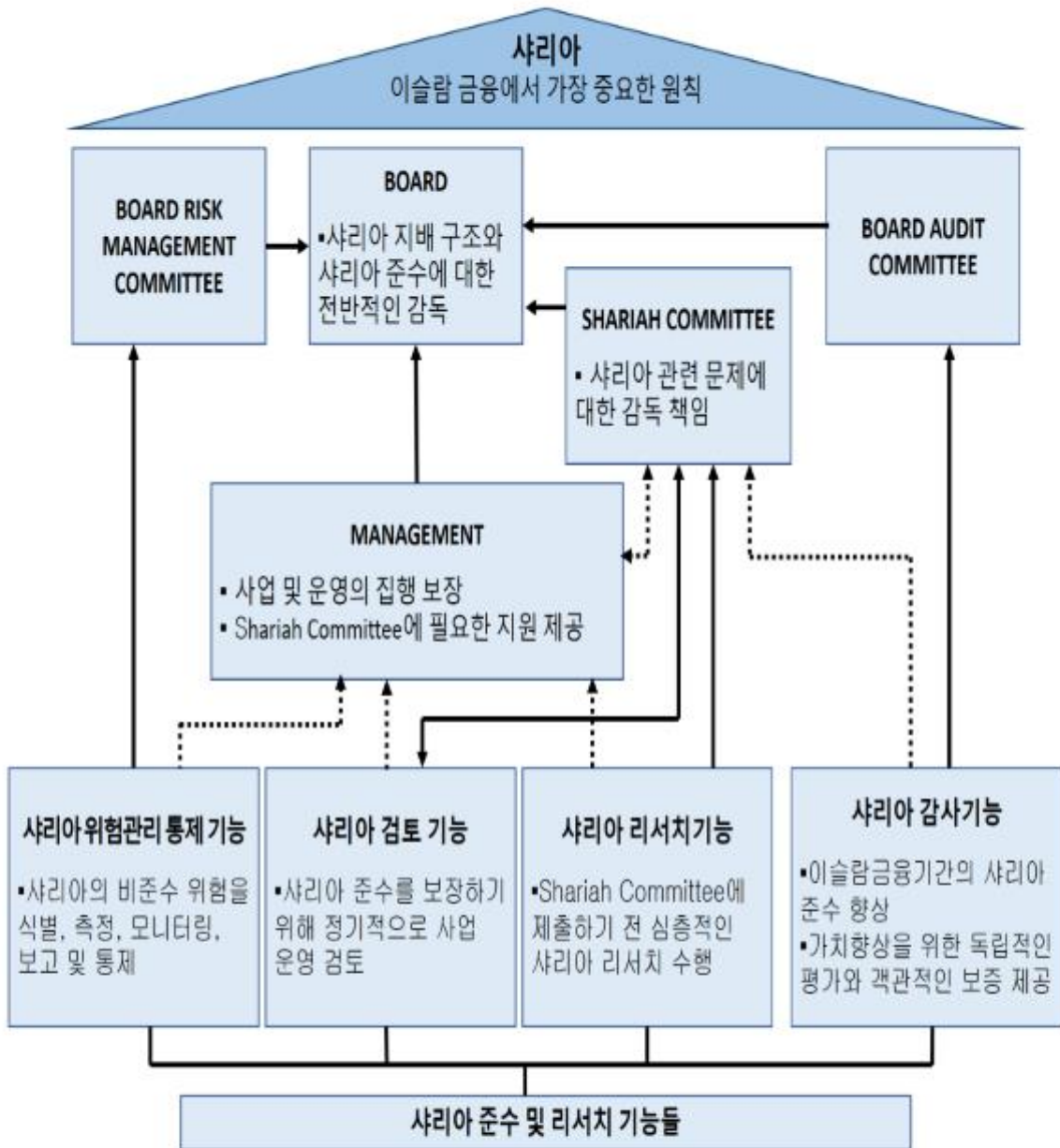
자본 시장 기법들의 창안, 유통 및 거래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MIFC 이니셔티브 하의 금융 상품과 서비스는 모든 통화로 제공될 수 있으며, 또한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에게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이슬람 금융 감독 위원회(Islamic Finance Services Board/ IFSB)를 설립하여 이슬람 금융, 보험 산업 및 자본 시장에 대한 세계적인 기준 및 가이드 원칙 제시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슬람 금융 국제 교육 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in Islamic Finance/ INCEIF)는 말레이시아를 이슬람 금융 교육의 중심지로 만들고 세계이슬람 금융 산업을 위한 인적 자원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2006년 설립되었다. 또한, 샤리아와 이슬람 금융 분야의 응용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2008년 국제 이슬람 금융 연구원(International Shariah Academy for Islamic Finance/ ISRA)을 설립하였다.⁴⁰⁾

다음의 말레이시아의 샤리아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모델은 말레이시아의 모든 이슬람 금융기관이 샤리아의 경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매우 포괄적인 체제이다. 이슬람 금융 업무의 운영에 있어서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이 샤리아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이다. 이 프레임워크는 은행내의 모든 검토 및 감독 기능을 포함하여 이슬람 금융 사업의 운영을 총괄한다. 또한, 이슬람 금융과 관련하여 샤리아위원회 및 기타 모든 사내 위원회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설명한다.

40) Bank Negara Malaysia(말레이시아중앙은행). (2015). "ASIA: Future prospect for Islamic Finance."

[그림 III-3] 이슬람 금융 기관에 대한 샤리아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모델



※ 출처: Bank Negara Malaysia(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위 샤리아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모델에서 보여지듯이 Shariah Committee(샤리아 위원회), Board Risk Management Committee(이사회 리스크 관리위원회), Management(매니지먼트)와 Board Audit Committee(이사회 감사위원회)는 Board(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Shariah review(샤리아 검토)는 Shariah committee와 Management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Shariah audit(샤리아 감사)는 Board Audit Committee와 Shariah Committee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Shariah Research(샤리아 리서치)는 Shariah Committee와 Management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며, Shariah Risk Management Control(샤리아 리스크 관리 통제)는 Board Risk Management Committee와 Management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2)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 관련 회계 및 조세 제도

(1)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 회계 기준

글로벌 시장에서 이슬람 금융이 급속한 수용되고 있다는 측면과 이슬람 금융이 기존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대안책이 되기 전 그 역량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때, 이슬람 금융에 대한 회계 및 재무 회계, 감사 및 지배 구조에 관한 이슈들의 해결은 중요하다. 이를 위한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 재무 보고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바레인(Bahrain)에 위치한 이슬람 금융 기관 회계 및 감사 기구(Accounting and Auditing Organisation for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 AAOIFI)는 1990년 설립 이래 이슬람 기관들에 대한 회계, 감사, 거버넌스 및 샤리아 스탠다드를 60개 이상 발행했다. 이 기구가 이슬람 스탠다드 제시의 선구자임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의 회계 기준 위원회(Malaysian Accounting Standards Board/ MASB)는 바레인 이슬람 금융 기관 회계 및 감사 기구(AAOIFI)의 회계 기준이 말레이시아의 회계 기준 위원회(MASB)가 승인한 회계기준과 유사한 개념적 틀을 바탕으로 개발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MASB는 AAOIFI의 재무 회계 기준을 말레이시아 회계 기준 위원회의 권한 하에 있는 기업들이 사용하도록 승인하지 않았다. 이것은 말레이시아 내 기업들이 말레이시아의 회계 기준에 벗어나는 AAOIFI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말레이시아 금융 기관들은 현재 MASB가 승인한 회계 기준인 Malaysian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MFRS)에 따라 샤리아 준

수 거래 및 이슈들을 고려해야 한다. MASB는 별도의 이슬람 회계기준을 제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슬람 금융 거래에 대한 말레이시아 회계 재무 보고 기준의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슬람 회계 지침을 공시했다.⁴¹⁾

이슬람 회계 지침

- **Statement of Principles i-1 (SOP i-1) “Financial Reporting from an Islamic Perspective”**: SOP i-1은 MASB가 승인한 회계 기준이 샤리아의 금지가 없는 한 이슬람 금융 거래에 적용된다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 **Technical Release i-1 (TR i-1) “Accounting for Zakat on Business”**: 기업이 사업에 대하여 Zakat(이슬람의 종교세)을 지불할 경우 기업의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이것은 하나의 법인격체로서 지불한 Zakat과 주주들을 대신하여 지불한 Zakat을 구별하는 것이다.

- **Technical Release i-2 (TR i-2) “Ijarah”**: 임차인에게 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한편, 자산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유지된다.

- **Technical Release i-3 (TR i-3)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of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 TR i-3는 주로 이슬람 금융 기관이 사용하는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과 관련된다.

- **Technical Release i-4 (TR i-4) “Shariah Compliant Sale Contracts”**: TR i-4는 샤리아 준수 판매 계약을 통해 인수되거나 이전된 품목에 대한 인식 및 취소 요건을 명확히 한다.

41) Bank Negara Malaysia(말레이시아중앙은행). (2015). “ASIA: Future prospect for Islamic Finance.”

(2)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 관련 조세

일반적으로 이슬람 금융 상품에 적용되는 별도의 세법은 없다. 하지만, 소득세법(Income Tax Act 1967)은 다음과 같은 이슬람 거래에 대한 특정 조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표 III-2] 말레이시아 소득세법 이슬람 금융 관련 조항

조항	법령 및 해석
Section 2(7)	<p>“any reference in this Act to interes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gains or profits received And expenses incurred, in lieu of interest, in transaction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Syariah”</p> <p>“이 법에서 ‘interest’는 샤리아의 기본 원칙에 따라 수행된 거래에서 이자 대신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에도 적용된다”</p> <p>▶ 이러한 맥락에서, 이슬람 금융 거래에서 파생된 이익(이자와 동등한 개념, 샤리아 원칙에서 이자는 허락되지 않음)은 기존 금융에서의 이자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p>
Section 2(8)	<p>“Subject to subsection (7), any reference in this Act to the disposal of an asset or a lease shall exclude any disposal of an asset or lease by or to a person Pursuant to a scheme of financing approved by the Central Bank, the Securities Commission, the Labuan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or the Malaysia Co-operative Societies Commission, as a scheme which i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Syariah where such disposal is strictly required for the</p>

	<p>purpose of complying with those principles but which will not be required in any other schemes of financing”</p> <p>“이 법에서 ‘자산의 처분 혹은 리스’는 중앙은행, 증권위원회, 라부안 금융 서비스국, 또는 Malaysia Co-operative Societies Commission에 의해 승인된 파이낸싱 방안에 따른 자산의 처분 혹은 리스 거래를 배제한다. 왜냐하면, 승인된 파이낸싱 방안에 따른 자산의 처분 혹은 리스 거래는 다른 어떠한 파이낸싱 방안에서는 요구되지 않는 샤리아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거래방식이기 때문이다”</p> <p>▶ 이 조항은 자산의 처분이나 리스와 관련된 아무런 세금 문제없이 이슬람 파이낸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p>
Section 6A(3)	<p>“A rebate shall be granted for the year of assessment for any zakat, fitrah or any other Islamic religious dues payment of which is obligatory and which is paid in the basis year for that year of assessment and evidenced by a receipt issued by an appropriate religious authority established under any written law”</p> <p>“Zakat(이슬람 종교세), Fitrah(이슬람 기부물품) 및 각종 이슬람교 관련 회비 등은 환급이 허용되며, 서면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적법한 종교 기관에 의해 발행된 영수증을 통해 입증한다”</p> <p>▶ 이슬람 종교세, 기부금, 회비 등의 환급 조항</p>
Section 18 [Part III]	<p>“Insurance” includes a takaful scheme pursuant to the Takaful Act 1984. “Premium”, in relation to insurance, includes contributions or instalments</p>

	<p>payable under a takaful scheme pursuant to the Takaful Act 1984.</p> <p>“보험에는 Takaful Act 1984에 따른 타카풀 거래가 포함된다. 보험과 관련하여, 프리미엄에는 Takaful Act 1984에 의거하여 타카풀 거래에서 지불하는 분담금 또는 할부금도 포함된다.”</p> <p>▶ 타카풀 관련 조항</p>
--	---

※ 출처: Malaysian Institute of Accountants(MIA)

소득세법(Income Tax Act 1967)과 별도로, 이슬람 금융 거래가 기존의 금융 거래와 비교하여 불리하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다음의 표와 같은 여러가지 인지세 면제 명령이 발효되었다.

[표 III-3] 인지세 면제 명령

면제 명령	명령 및 해석
Stamp Duty (Exemption) (No.8) Order 2000	<p>Exempted from stamp duty on all instruments of Al-Ijarah Head Lease Agreement of immovable property executed between a customer and a financier(i.e. a bank, financial institution or leasing company), pursuant to a scheme of Al-Ijarah Term Financing Facility.</p> <p>▶ Al-Ijarah Term Financing Facility의 방안에 따라 고객과 금융 회사(은행, 금융기관, 또는 리스 회사)간에 체결된 부동산 관련 Al-Ijarah Head Lease Agreement의 모든 문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p>
Stamp Duty (Exemption) (No.9) Order 2000	All instruments of the Asset Sale Agreement or the Asset Purchase Agreement executed

	<p>between a customer and a bank made under the principles of the Shariah law for the purpose of renewing any Islamic Overdraft financing facility, if the instruments for the Islamic overdraft financing facility have been duly stamped.</p> <p>▶ 이슬람 당좌대월 약정을 갱신할 목적으로 샤리아 법의 원칙에 근거하여 고객과 은행 간 체결된 Asset Sale Agreement나 Asset Purchase Agreement의 모든 문서에 대한 인 지세 면제</p>
<p>Stamp Duty (Exemption) (No.38) Order 2002</p>	<p>Exempted from stamp duty on all instruments of the Bai Inah Sale Agreement or the Bai Inah Purchase Agreement executed between a customer and a financial institution made under the principles of Shariah law for the purpose of the issuance of credit cards.</p> <p>“Financial institution” means any financial institution licensed und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Act 1989; • the Islamic Banking Act 1983; •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supervised under Section 2 of the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Act 2002; or • any institution approved by the Central Bank of Malaysia <p>▶ 신용카드 발급을 목적으로 샤리아 법의 원칙에 따라 고객과 금융기관간에 체결된 Bai Inah Sale Agreement 혹은 the Bai Inah</p>

	Purchase Agreement의 모든 문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Stamp Duty (Exemption) (No.2) Order 2004	<p>All instruments executed between a customer and a financier under an Asset Sale Agreement or an Asset Lease Agreement made under the principles of the Shariah for the purpose of renewing any Islamic revolving financing facility.</p> <p>▶ 이슬람 회전대출 약정 갱신의 목적으로 샤리아 원칙에 따라 고객과 금융업자간에 체결된 Asset Sale Agreement 혹은 Asset Sale Agreement의 모든 문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p>
Stamp Duty (Exemption) (No.3) Order 2004	<p>All instruments made by any financier which relate to purchase of property for the purpose of lease back under the principles of the Shariah or under a principle sale and purchase agreement by which the Financier assume the contractual obligations of customer.</p> <p>▶ 샤리아 원칙 혹은 금융업자가 고객의 계약상 의무를 지는 판매 및 구매 계약에 따라 Leaseback(구입한 자산을 매각주에게 임대)의 목적으로 자산을 구매하는 것과 관련된 금융업자의 모든 문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p>

※ 출처: Malaysian Institute of Accountants(MIA)

(3)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에 대한 조세 중립성 및 혜택

① 조세의 중립성 Tax Neutrality

현재 말레이시아의 세법은 세금 중립에 관련된 조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금융 거래가 세법상 기존 금융 거래와 유사하게 취급될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금융과 기존 금융간의 조세의 중립성을 부여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이다. 이러한 조세의 중립성은 기존 금융 상품과 이슬람 금융 상품간의 공정한 경쟁을 장려해왔다.

말레이시아의 소득세법 2(7)항은 샤리아 원칙에 따라 수행된 금융 거래에서 이자 대신 발생하는 수익을 이자로 취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금 측면에서 샤리아 금융 거래와 관련된 이익은 기존 금융거래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 조세의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소득세법 2(8)항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나 증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파이낸싱 계획에 따른 자산의 처분 또는 리스는 자산의 처분 또는 리스 행위에서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엄격히 샤리아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자산의 처분 또는 리스 행위가 소득세법상 해당되지 않는 행위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러한 자산의 처분 및 리스 행위로 인해 추가적인 세금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조세의 중립성은 인지세에서도 나타난다. Stamp Act 1949는 샤리아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추가적인 문서들에 관하여 인지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슬람 금융 거래에 대한 조세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런 인지세 면제로 인하여 기존의 금융과 비교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인지세 비용이 없다.

[표 III-4] 조세 중립성으로 인한 효과

조세 중립성 부재시	조세 중립성으로 인한 효과
자산 및 부동산의 처분에는 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	샤리아 원칙에 의거한 이슬람 금융 거래시 요구되는 자산 및 부동산의 처분은 소득세 적용을 받지 않음. 따라서 이슬람 거래시 요구되는 판매 및 Leaseback에 대하여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음.
자산의 판매 및 Leaseback에 대하여 이중으로 인지세 부과	기저의 자산의 처분에 대한 인지세 면제는 기존 금융 거래와는 대조적으로 추가적인 인지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인지세의 이중 부과를 방지함.
기업이 세액 공제로 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련한 불확실성	이슬람 금융 거래시 수익 요소는 조세 관련하여 이자로 취급됨. 따라서, 세액 공제 요건이 충족되는 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가 가능함.

※ 출처: Malaysian Institute of Accountants(MIA)

이슬람 금융 관련 조세에 있어서의 중립성은 매우 중요하다. 앞서 서술한 말레이시아의 조세 중립성으로 인하여 이슬람 금융은 기존 금융과 비교하여 공평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조세의 중립성이 없다면 이슬람 금융은 기존 금융에 비해 세부담이 커지므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② 세제 혜택 (Tax Incentives)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금융 거래에 대하여 다양한 세금 인센티브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 세금 인센티브는 말레이시아 이

슬람 금융 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세금 인센티브는 크게 은행, 타카풀 및 펀드 관리 등 다양한 이슬람 금융 거래에 대한 인센티브,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 거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및 전문 기술에 대한 인센티브 세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 시장을 확대하고 말레이시아를 국제 이슬람 금융의 중심지로 유지하기 위한 이슬람 금융 스펙트럼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세금 인센티브는 아래와 같다.

[표 III-5] 이슬람 금융 관련 세제 혜택

세제 혜택	주요내용
외화로 거래되는 이슬람 은행 및 타카풀 회사에 대한 세금 면제	2007~2020년까지 ⁴²⁾ • Islamic Banking Act 1983에 의거 설립된 이슬람 은행 및 사업부에 대하여, 말레이시아 거주자와의 거래를 포함한 외화로 수행되는 이슬람 은행 사업에서 과생된 소득에 대하여 100% 세금 면제 • Takaful Act 1984에 의거 설립된 타카풀 회사 및 사업부에 대하여, 말레이시아 거주자와의 거래를 포함한 외화로 수행되는 타카풀 사업에서 과생된 소득에 대하여 100% 세금 면제
원천징수세 면제	• Islamic Banking Act 1983에 의거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재무부장관이 승인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비거주자가 받은 이자 수입에 대하여 원천세 면제

42) 당초 2016년까지였으나 2020년으로 연장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전환사채를 제외한 링깃으로 발행된 이슬람 증권 및 사채와 관련하여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수익에 대하여 원천세 면제. <p>증권위원회나 라부안 금융서비스국에 의해 승인된 링깃이 아닌 화폐로 발행된 이슬람 증권 및 사채도 원천세 면제.</p> <p>링깃이 아닌 이슬람 증권에 의해 거주자에게 지급된 이익의 경우에는 증권위원회나 라부안 금융서비스국에 의해 승인된 경우 원천세 면제</p>
양도소득세 면제	<p>이슬람 원칙에 따른 사적 채무 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자산의 처분으로 발행하는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p> <p>BNM Sukuk Berhad(수쿠크중앙은행)에 의해 발행되었거나 발행될 Sukuk Bank Negara Malaysia -Ijarah와 관련하여 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과세대상 소득도 양도소득세 면제</p>
개인 세금 경감	<p>International Centre for Education in Islamic Finance (INCEIF)를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중앙은행이나 증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이슬람 금융 교육과정에 대하여 연간 최대 5천 링깃 세금 경감</p>
이슬람 증권 발행	<p>2018년까지, Mudharabah, Musharakah, Ijarah, Istisna 원칙에 기초한 이슬람 증권 및 증권위원회 또는 라부안 금융서비스국이 승인한 이슬람 증권의 발행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세액 공제</p>

인지세 면제	<p>2020년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은행의 샤리아자문위원회(SAC) 또는 증권위원회가 승인한 이슬람 금융 상품에 대하여 인지세 20% 면제 • 이슬람 금융기관에 의해 발행된 외화 표시 상품에 대하여 인지세 100% 면제
거주 기업에 대한 이중 세액 공제	<p>2018년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인된 소매채권 발행을 위한 추가 비용에 대하여 이중공제 • Mudharabah, Musyarakah, Istina, Murabahah 및 Tawarruq에 근거한 Bai' Bithaman Ajil의 원칙에 따른 수쿠크 발행을 위한 추가 비용에 대하여 이중공제
라부안기업을 포함한 거주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p>2018년까지</p> <p>ijarah와 Wakalah 원칙에 따른 수쿠크 발행을 위한 추가 비용에 대하여 세액 공제</p>
이슬람 증권 발행의 목적으로만 SPV를 설립한 회사	<p>SPC(Special purpose Company)에서 발생한 이슬람 증권 발행 비용에 대한 단일 세액 공제</p>

※ 출처: Malaysian Institute of Accountants(MIA), PWC

IV. 한국의 이슬람 금융

1 한국 이슬람 금융의 역사

한국의 이슬람 역사는 60년 미만으로 짧다. 1960년대 후반, 석유 가격이 폭등하고 중동지역에서 건설업이 활기를 띠면서부터 한국은 이슬람 국가들과의 교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1964년 10월 한국 이슬람 연합(Korea Muslim Federation)이 한국에서 유 최초로 이슬람 선교 단체로 설립되었다. 2014년 기준 한국에 8개의 이슬람 사원이 존재하고 있으며, 무슬림 인구 웹사이트에 따르면 한국의 무슬림 인구가 45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수치는 임시 거주자를 포함하여 외국인 무슬림 인구가 대부분으로 한국의 실제 무슬림 수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45만명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⁴³⁾

이러한 한국의 짧은 이슬람 역사속에서 2007년부터 국내 기업, 특히 증권회사에서 이슬람 금융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러한 관심은 2007년과 2008년 많은 회사들의 무슬림 국가와의 전략적 제휴로 나타났다. 무슬림 국가와의 전략적 제휴의 첫 사례는 2007년 굿모닝신한증권이 말레이시아의 KIBB (Kenanga Investment Bank Bhd)가 이슬람 금융 시장 진출을 위해 제휴한 것이다. 뒤이어 한국 투자증권이 이슬람 시장에 합류하는 과정에서 Malaysia Berjaya Land Berhad과 협력 관계를 맺었다. 대우증권은 CIMB Investment bank Berhad와 협력 관계를 맺고 수쿠크 채권을 발행하려고 시도했다. 한편, 우리투자증권은 2007년 Am Bank Group과 파트너십을 맺고, 2008년 말레이시아에 사무소를 설립하여 수쿠크를 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뒤이어 2010년에는 Qatar Islamic Bank과 기업금융 및 투자 은행 업무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43)

한편, 정부 차원에서도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는 한국의 이슬람 금융에 대한 움직임을 촉발시켰다.

[표 IV-1] 이슬람 금융의 도입을 위한 한국 정부의 주요 활동

시기	활동
2008년 8월	한국 중앙은행 Islamic Financial Services Board(이슬람 금융 감독 위원회)의 observer회원이 됨
2009년 1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IFSB (Islamic Financial Services Board)와 함께 이슬람 금융을 위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함
2009년 3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과 국내 금융기관들 주관으로 이슬람 금융 활성화 TF가 운영되어, 한국에서 이슬람 금융의 채택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이 논의됨
2009년 5월	싱가폴이 주최한 제6회 이슬람 금융 서비스 회담에 서 한국 설명회(Korea showcase) 개최함
2009년 9월	기획재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
2009년 1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조세소위원회에 제출되는 과정에서 무산됨
2010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조세소위원회 통과됨
2011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로 회부되었으나 통과하지 못함

2013년 6월	한국은행연합회가 카타르 중앙은행이 주최하는 이슬람 금융 워크숍에 참여함
2014년 3월	한국 중앙은행 IFSB의 준회원이 됨

※ 출처: Khan Tariqullah, Elsiefy Elsayed, Eunkyong Lee. (2014). "Legal and regulatory issues in issuing sukuk in south korea lessons from developed countries' exper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s, Commerce and Management.

세계 금융 위기를 극복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이후 국내 기업들의 이슬람 금융에 대한 관심이 감소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의 실패로 말레이시아 기업들과 함께 수쿠크를 발행하려던 일부 기업들이 타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금융에 대한 국내의 관심 및 활동은 지속되었다. 2010년, 한국기업 최초로 이슬람 금융을 사용한 사례가 나타났다. 동화 홀딩스라는 국내 법인이 무라바하(Murabahah)라는 이슬람 금융 기법을 통해 자금을 모으는데 성공했다. 동화홀딩스의 말레이시아 소재 계열사인 동화GH인터내셔널이 말레이시아에서 무라바하로 2400만 달러를 현지 금융회사들로부터 조달하였다. 이 거래는 수쿠크이 아닌 기존의 론(Loan)에 가까운 방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라바하 기법을 그대로 따른 이슬람 금융을 활용한 최초의 자금 조달 사례로 기록되었다.⁴⁴⁾ 최근에는 우리은행이 2016년 1월 12일 이슬람 금융 기법을 사용한 이슬람은행과의 자금거래에 성공했다. 우리은행 바레인지점이 마라바하 이슬람 금융 기법을 이용하여 카타르 이슬람은행에 1000만 달러를 빌려주는 거래에 성공한 것이다. 이 거래는 국내 은행 최초로 이슬람 은행에 자금을 빌려준 거래로 기록되었다.⁴⁵⁾

44) 김기태. (2011년 3월 7일). "말레이시아에서 불어오는 수쿠크법 좌초의 후폭풍". 한겨레 21

45) 나현철. (2011년 3월 4일). "수쿠크법 무산 후폭풍 ... 말레이시아 자금 조달 차질". 중앙일보

한편, 2014년 한국의 중앙은행은 아시아 전역의 규제 기관들이 성장하는 이슬람 금융 산업과 긴밀한 관계를 맺음에 따라, 이슬람 금융의 주요 표준 제정기구 중 하나인 Islamic Financial Services Board(IFSB/ 이슬람 금융 감독 위원회)에 가입했다.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 본부를 둔 IFSB가 발행한 가이드라인은 다수의 이슬람 국가에서 이슬람 금융이 은행 부문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다른 국가들로 새로운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장함에 따라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은행은 IFSB에 가입한 59번째 규제 기관으로써, 룩셈부르크와 일본의 중앙은행 그리고 홍콩과 싱가포르의 통화청과 함께 IFSB의 총 회원수를 184명으로 늘렸다. 한국의 수출입은행은 이미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를 발행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 채권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시장에 활용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한국은행의 IFSB 가입으로 동남아시아 이슬람 금융 허브와 한국간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이슬람 금융 도입의 필요성

이슬람 금융은 기존의 금융시스템에 비해 높은 재정적인 안정성으로 인하여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 사이에 인기가 높아졌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 위기는 한국까지 뒤흔들며, 외국 투자자금이 주식시장에서 대거 이탈하도록 만들었다. 2008년 5월 1900선이던 코스피 지수는 2009년 1100선까지 떨어졌으며, 외환보유액은 26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로 급감하면서 금융 당국은 외화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이나 유럽의 자금 뿐 아니라 제3의 지역에서 자금을 확보하여 경로를 다양화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그중에서도 중동의 오일머니에 관심이 집중되었다.⁴⁶⁾ 2008년의 금융 위기로 인해 한국 뿐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 사이에 이슬람 금융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이슬람

46) Thomson Reuters. (2016). "State of the Global Islamic Economy Report 2016/17."

자금 도입을 위한 이슬람 채권 지원방안을 내놓는 등 이슬람 금융 도입에 박차를 가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연이어 실패하면서 주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슬람 금융 도입의 필요성으로 우선 이슬람 금융의 중심지로 도약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이슬람 채권에 대한 압박을 들 수 있다. 2008년 금융 위기 후에 이슬람 채권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전인 1990년대부터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오일머니 유치를 위하여 말레이시아로 진출하였다. 이슬람 샤리아 율법의 구속이 없는 일반 링깃 채권을 발행하는 형식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외화를 확보하였다. 하나은행은 2009년 10억링깃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였으며, 현대캐피탈도 2009년까지 총 20억 링깃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였다. 또한, 2010년까지 30억 링깃 규모를 발행한 수출입은행 등 우리나라의 여러 금융기관들이 말레이시아에서의 외화 확보에 뛰어들었다.⁴⁷⁾

하지만, 2010년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에서 채권 발행액 중 일부를 이슬람채권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말레이시아에서의 외화 확보에 차질을 빚었다. 2010년 12월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한국 산업은행에 35억링깃의 채권 발행을 승인하였는데, 채권 발행액 중 25억 링깃을 이슬람채권으로 발행해야한다는 조건을 걸었던 것이다. 그러나, 2011년 수쿠크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이슬람 채권으로 발행해야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외화 확보에 차질을 빚었다. 수출입은행도 10억달러 규모의 링깃 채권 발행을 신청했지만, 3억달러만 승인을 받는 등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슬람 채권을 발행하라고 압박하기 시작했다. 말레이시아의 이런 압박은 말레이시아의 오일머니를 확보하려면 이슬람 금융의 기법을 따르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슬람 금융이 발달한 말레이시아는 그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링깃 채권의 발행을 줄이는 한편 이슬람 채권의 발행을 증가시키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수쿠크법 개정의 실패로 국내 금융기

47) Khan Tariqullah, Elsiefy Elsayed, Eunyoung Lee. (2014). "Legal and regulatory issues in issuing sukuk in south korea lessons from developed countries' exper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s, Commerce and Management

관들이 말레이시아에서의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슬람 금융을 도입해야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외환 자금 조달의 경로를 다양화 하는데에 있다. 비단 말레이시아에서의 자금 확보 뿐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지 모르는 금융 위기에 대비해 다양한 자금 확보 루트를 개척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말한 2008년 금융위기에 서 겪었듯이 미국 및 유럽의 자금에만 의존하다 보면 미래에 외환 유동성에 있어 위기가 찾아올 지 모른다.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외환 유동성 위기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하여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여 오일 머니 등 풍부하고 다양한 자금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2016/17 Global Islamic Economy 보고서에 따르면⁴⁸⁾, 2015년 현재 이슬람 금융 시장은 2조 달러 규모의 자산으로 추정되며, 그 중 이슬람 은행은 1조 4500억 달러, 타카풀 부문은 380억 달러, 이슬람채권인 수쿠크 부문은 3420억 달러, 이슬람 펀드는 66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이슬람 금융 자산은 연평균 복합 성장률 12%로 2021년에는 3.5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이슬람 금융 부문은 지난 10년간 매년 10~1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현대의 세계 경제가 요구하는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금융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빠르게 성장하는 이슬람 인구와 함께, 이슬람 경제도 2014년 GDP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 이슬람 인구는 기존의 금융 상품과 이슬람 금융 상품이 동등한 가격 환경에 있다면, 종교적인 의무를 동시에 이행할 수 있는 이슬람 금융 상품에 편향될 것이다. 또한 이슬람 금융에 구현된 가치는 리스크를 공유하고 윤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비 무슬림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이슬람 금융은 단지 이슬람교를 주된 종교로 하는 국가들에 국한된 금융이 아니다. 이슬람 국가 뿐 아니라 영국이나 싱가포르와

48) 김한수김보영. (2012). "이슬람금융의 현황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같은 비 이슬람 국가들도 이미 이슬람 금융과 수쿠크를 사용하는 등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였다. 일본, 중국, 대만과 같은 다른 비 이슬람 국가들도 경제 안전과 발전을 위해 이슬람 금융 도입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비 이슬람 국가의 이슬람 금융은 각국의 기존 법과 양립할 수 없는 이슬람 법의 특성때문에 법적·규제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슬람 금융 시스템의 다양성의 이점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슬람 금융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이슬람 금융을 통해 한국은 서구의 제한 없이 경제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슬람 금융이 이슬람교가 지배적인 종교가 아닌 국가들을 포함해 많은 국가들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다. 비 이슬람국가인 영국과 홍콩의 이슬람채권 발행 등 2015년 13개의 관할 구역에서 수쿠크 국채를 발행하였으며, 이는 이슬람 금융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 증가를 보여준다.

이슬람 금융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 증가와 그에 따른 금융 자산 규모 등 폭발적인 성장은, 이슬람 금융이 미래에 다가올 수 있는 금융 위기에 대비하여 외화 자금의 조달을 다양화 하는 수단으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 정부는 이슬람 금융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적인 안정성과 중동 국가들의 풍부한 외환, 즉 오일머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금융 위기를 극복한 이후 현재에는 외환 유동성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외환 유동성에 위기가 발생할 지 모른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여 자금 조달의 다양성 및 금융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3 한국의 이슬람 금융 도입 현황

1) 한국 정부의 도입 현황

앞서 한국의 이슬람 금융의 역사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에서 이슬람 금융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진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이슬람 금융 시장의 성장이 계속되고, 비 이슬람국가들을 포함한 각국의 정부가 이슬람 금융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이 시작 됨과 동시에 2008년 발생한 세계 금융 위기는 한국 정부의 이슬람 금융에 대한 움직임을 촉발시켰다. 한국 정부는 내부적으로 이슬람 금융에 대한 도입 및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IFSB) 가입에 대한 검토와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2008년 한국은행이 IFSB의 Observer회원이 되었으며, 2009년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IFSB와 함께 이슬람 금융을 위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며 이슬람 금융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출했다. 뒤이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과 국내 금융기관들 주관으로 이슬람 금융 활성화 TF가 운영되어, 한국에서 이슬람 금융의 채택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이 논의되었다. 2009년 5월에는 싱가포르가 주최한 제6회 이슬람 금융 서비스 회담에서 한국설명회(Korea Showcase)를 개최하여 오일머니의 국내 유치 가능성을 점검하고 이슬람 금융권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협력 강화에 합의하는 등 이슬람 금융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이어나갔다.⁴⁹⁾

49)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4.12.23.>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② 삭제 <2002.12.11.>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1.>

[제목개정 2010.1.1.]

이러한 대외적인 움직임과 함께, 한국 정부는 비 이슬람 국가들이 이슬람 금융 도입시 문제시 되는 조세관련 문제들을 검토하여, 이슬람 금융 도입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관련 세법 개정에 착수했다. 2009년 9월 기획재정부는 이슬람채권의 발행을 지원하는 방안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세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국내법상 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수쿠크에 대하여 기존의 외화표시채권과 동등하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발행 절차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슬람채권이 국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조특법 개정안이 조세소위원회에 제출되는 과정에서 무산되었다. 2010년 12월에는 조특법 개정안이 조세소위원회에 통과되었으나 2011년 2월 국회로 회부된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관련 법 개정은 중단된 상태이다.

이슬람 금융 도입을 위한 정부의 관심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여러차례 무산되고 금융 위기를 극복하면서 자연스럽게 감소되었다. 하지만, 앞서 ‘이슬람 금융 도입의 필요성’에서 논의한 대로 지속적이고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외환 유동성 및 자금 확보의 다양성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이슬람 금융의 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 되고 있다. 2014년 3월, 한국은행은 제 24차 IFSB 이사회에서 IFSB의 준회원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슬람채권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세법의 개정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2) 금융업계의 도입 현황

2007년부터 국내 기업, 특히 금융 기관에서 이슬람 금융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말레이시아 등에 간접적 진출도 시작되었다. 이러한 관심은 2007년과 2008년 많은 회사들의 무슬림 국가와의 전략적 제휴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슬람채권 관련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자 국내 금융 기관들의 사업은 중단되거나 지지 부진한 상태로 머물게 되었다.

[표 IV-2]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이슬람 금융 도입 현황

<p>대우 증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2월, 말레이시아 최대 투자은행인 CIMB Investment Bank Berhad와 전략적 업무제휴를 맺고 이슬람금융 진입을 위한 투자자문 및 상품개발 지원을 받아 이슬람 채권 발행 추진 - 대우증권의 IB 인력을 CIMB에 파견 - 중동국부펀드 투자 유치를 위해 실무진을 두바이, 아부다비, 카타르, 쿠웨이트 등에 파견하여 전략적 지분 매입 가능성을 타진
<p>신한 금융 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11월, 말레이시아 KIBB 증권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이슬람채권 발행 업무에 착수하였으나 현재 모든 이슬람금융 관련 사업 중단 상태
<p>우리 투자 증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말레이시아 AM Bank 및 Dubai Islamic Bank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이슬람금융 진출을 준비 - 2008년 6월, 말레이시아 현지 사무소 개설 - 이슬람권 투자 유치를 위해 두바이 카타르 등 중동 지역 금융회사의 재계 인사들과 접촉하는 등 이슬람금융 사업을 위해 꾸준한 네트워크 형성에 노력 - 2010년 3월, Qatar Islamic Bank와 기업금융, 투자은행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p>한국 투자 증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슬람금융전담팀을 설치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하였으며 법안 통과 이후 가장 먼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일시적인 자금조달창구가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 - 2007년 12월, 말레이시아 Berjaya Land Berhad와 전략적 업무 제휴를 통해 이슬람 경제권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 2008년 9월, 샤리아 학자이자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자문위원회 의장인 모하메드 다우드 바커(Dr. Mohd Daud Bakar) 박사를 자문역으로 영입하여 본격적으로 이슬람금융사업에 진출, 국내금융기관 최초로 이슬람채권 발행 준비에 착수 - 한국기업에 투자하는 샤리아 적격의 이슬람펀드를 만들어 중동 투자자금의 국내 유치 계획 - 2008년 이후 정기적으로 말레이시아, 중동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

※ 출처: 김한수김보영. (2012). “이슬람금융의 현황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표 IV-3] 이슬람 금융 센터에 진출한 한국 금융회사

국가/도시	회사명	진출형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증권) 우리투자증권	사무소
	(은행) 우리	사무소
	(은행) 외환	지점
싱가포르	(보험) 코리안리	지점
	삼성화재	사무소
	(은행) 외환	지점
	우리	지점
	신한	지점
	산업	지점
	하나	지점
	(증권)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현지법인
	우리투자증권	현지법인
	트러스톤자산운용	현지법인
	한국투자증권	현지법인
	삼성투자신탁운용	현지법인
	우리투자증권	현지법인
KTB투자증권	사무소	
UAE 두바이	(은행) 외환	사무소
	수출입	사무소
	우리	사무소
	하나	사무소
	(보험) 코리안리	사무소
	서울보증보험	사무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은행) 외환	현지법인
	수출입	현지법인
	우리	현지법인
	하나	현지법인
	(보험) LIG손해보험	현지법인
	메리츠화재	현지법인
	삼성화재	현지법인
	(증권) 우리투자증권	사무소
우리투자증권	현지법인	

※ 출처: 김한수김보영. (2012). “이슬람 금융의 현황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3) 기타 유관기관 현황

한국 정부 및 국내 금융기관들 뿐 아니라 금융 유관기관들도 이슬람 금융과 관련하여 노력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한국거래소이다. 한국거래소는 Bursa Malaysia(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국제적인 이슬람 금융 허브로 발전하려는 말레이시아를 지원하고 있다. 2009년 Bursa Malaysia의 채권시스템(ETP)을 개발하여 수쿠크 거래의 플랫폼을 지원하였다. 또한, 이슬람과생상품 매매시스템인 BCH를 개발하여 장외 무라바하 채권매매 거래를 최초로 장내화하는데 성공했다.⁵⁰⁾ 이러한 한국거래소의 이슬람 금융시장의 선두주자로 떠오른 말레이시아와의 파트너십을 계기로 이슬람 금융의 도입을 위한 협력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이슬람 자본 시장에 한층 가까이 다가갔다. 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에 샤리아지수를 도입하는 등 이슬람 금융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한국의 이슬람 금융 도입 관련 이슈

한국의 성공적인 이슬람 금융 도입을 위하여, 세법, 신탁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 법규와 관련하여 걸림돌이 되는 이슈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법규 관련 이슈들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당면한 과제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1) 국내 법규 관련 이슈

(1) 세법

한국의 세법 문제는 이슬람 금융의 도입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앞서 살펴본 말레이시아의 경우 기존 금융과 이슬람 금융

50) 김한수김보영. (2012). "이슬람금융의 현황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의 조세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상 여러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조세의 중립성을 위한 규정이 전무한 상태이다.

원칙적으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은 14%의 세율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⁵¹⁾에 의거 외국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채권과는 다른 방식인 이슬람 채권, 즉 스쿠크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세 및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금융의 특징때문에 기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의 적용에 있어 조세의 중립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의 경우 기존의 외화채권과 마찬가지로 일정금액의 자금을 빌려서 실질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하는 내용은 동일하다. 기존 외화채권의 경우 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의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금융의 특성상 수쿠크의 경우 매매 및 리스의 형태를 띄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면제되는 외화채권의 이자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세 및 법인세를 납부해야하므로 이는 조세의 중립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적용되지 않아 발생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부 문제뿐만 아니라, 현행 국내의 세법은 다른 세금 문제도 야기하다. 기존의 금융과는 다르게 이자의 수수를 금지하는 이슬람 금융의 특성 때문이다. 앞서 설명한 이슬람 금융 거래의 형태 중 하나인 Murabaha(무라바하)의 경우 기존의 할부 금융과 유사한 구조로 이슬람 금융기관이 판매자로부터 특정 상품을 구입

51)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하여, 일정한 금액의 마진을 더한 가격으로 차입자에게 재판매 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사실상 금융기관은 이자의 대응으로 마진을 지급받게 된다. 또다른 형태인 Ijarah(이자라)는 리스 형태의 금융과 유사하다. 금융기관이 건물이나 설비 등을 구입하여 고객에게 사용권을 주고 계약 기간 동안 리스이용료를 받다가 계약이 끝난 시점에 건물이나 설비 등을 반환한다. Ijarah 구조에서 금융기관이 지급받는 리스이용료는 이자의 개념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⁵²⁾

이러한 실제 자산의 매매 거래가 아니지만 샤리아 원칙을 지키기 위해 자산의 매매 형태를 띤 이슬람 금융의 거래 특성상, 자산의 매매로 인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부과된다. 또한 취득세 및 등록세 문제도 발생한다. 실제적으로 자산의 매매가 아니더라도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존 금융과 비교하여 조세의 중립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기존 금융과 유사한 거래 내용으로 동일한 수익을 창출하더라도, 이슬람 금융의 경우 현행법상 수익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하므로 기존 금융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한국의 조세의 특성상 이슬람 금융, 특히 이슬람채권인 수쿠크의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009년 9월 기획재정부가 이슬람채권의 발행을 지원하는 방안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유이다.

52)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 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1.1.]

2009년 기획재정부가 제안했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이슬람채권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⁵³⁾

(의안번호 1806159/ 제안일자 2009-09-28)

아. 이슬람채권 발행에 대한 세제지원(안 제21조의2 신설, 안 제119조 및 제120조)

1)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통하여 발행한 외화로 표시된 이슬람채권의 수익도 일반 외화표시채권과 같이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인세를 면제하는 등 과세특례를 신설함.

2) 내국법인의 이슬람채권 발행 활성화로 이슬람자금의 국내투자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거래이지만 이자수수를 금지하는 샤리아 원칙 때문에 기존의 다른채권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되는 수쿠크 등의 이슬람 금융 기법에 대하여 기존의 금융과 동일한 대우를 하자는 취지이다. 이러한 조세의 중립성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⁵⁴⁾ 원칙에 근거하는

53) Khan Tariquillah, Elsiefy Elsayed, Eunyoung Lee. (2014). "Legal and regulatory issues in issuing sukuk in south korea lessons from developed countries' exper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s, Commerce and Management

5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31., 2000.1.21., 2000.10.23., 2001.3.28., 2003.5.29., 2005.7.29., 2007.8.3., 2008.2.29., 2010.5.17., 2011.3.31., 2011.5.19., 2012.12.18., 2015.1.6., 2016.3.29., 2016.5.29.>

1.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유동화전문회사(資産流動化業務를 專業으로 하는 外國法人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다. 신탁업자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라.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유동화자산 또는 이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에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당연한 과세 논리이다. 어떠한 거래 형태를 지녔는지와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에 따라 거래 내용을 포착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르면, 수쿠크 기법은 표면상 매매 혹은 리스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거래 내용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존의 다른 채권들과 똑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공정하다. 기존 일반 채권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 의거 외국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 받지만, 수쿠크의 경우 면제 대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국내법상 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수쿠크에 대하여 기존의 외화표시채권과 동등하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발행 절차를 적용하려는 취지의 세법 개정안은 2009년 11월 조세소위원회에 제출되는 과정에서 무산되었다. 이후 여러차례에 걸쳐 회부된 세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하였다.

반면, 앞서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에서 살펴봤듯이 말레이시아 등은 조세의 중립성에 관련된 조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금융 거래가 세법상 기존 금융 거래와 유사하게 취급될 수 있다. 말레이시아의 소득세법 2(7)항은 샤리아 원칙에 따라 수행된 금융 거래에서 이자 대신 발생하는 수익을 이자로 취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금 측면에서 샤리아 금융 거래와 관련된 이익은 기존 금융거래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 조세의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소득세법 2(8)항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나 증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파이낸싱 계획에 따른 자산의 처분 또는 리스는 자산의 처분 또는 리스 행위에서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엄격히 샤리아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자산의 처분 또는 리스 행위가 소득세법상 해당되지 않는 행위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러한 자산의 처분 및 리스 행

위로 인해 추가적인 세금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조세의 중립성은 인지세에서도 나타난다. Stamp Act 1949는 샤리아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추가적인 문서들에 관하여 인지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슬람 금융 거래에 대한 조세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런 인지세 면제로 인하여 기존의 금융과 비교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인지세 비용이 없다.

(2) 신탁법

신탁법과 관련하여 한국은 자산의 이중적인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중 소유권이란 법적인 소유권과 실질적인 소유권을 의미한다.

법적인 소유권과 실질적인 수혜의 소유권을 분리하는 개념은 샤리아 원칙에 의해 인정된다. 수쿠크 구조에서, 자산이 SPV⁵⁵⁾ 발행자에게 이전되고, 다시 그 자산이 반환되면, 그 자산에 대하여 법적인 소유권과 실질적인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 경우, 자산이 이동할 때 수쿠크를 지닌 사람에게 실질적인 소유권이 양도되는 것으로 인정되며, 법적인 소유권은 자산의 원래 소유자가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해당하는 자산에 대하여 법적인 소유자와 이중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적인 소유권과 실질적인 소유권에 대한 별도의 개념이 없는 한국은 자산이 SPV로 이전될 때와 그 자산이 반환될 때 모두 법적 소유권이 이전된다. 따라서, 이슬람 금융의 독특한 구조로 인한 자산의 이동에 양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된다. 한국의 신탁법은 모든 경제적 이익을 수탁자가 아니라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소득세법에 따르면 수익자가 납세자가 된다.⁵⁶⁾

55) SPV: Special Purpose Vehicle 특수목적회사

56) 제18조(부수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2.11., 2016.6.28.>

1. 부동산의 임대. 다만,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법 제39조

이처럼 한국은 이중적인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아, 그에 따른 이중 과세 문제와 세금의 비효율로 인해 수쿠크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수쿠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⁵⁷⁾에 의거 자산유동화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서 자산 유동화가 수쿠크와 가장 유사하지만, 수쿠크에 대한 현행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게 하는 몇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우선, 만기일에 자산유동화는 자산소유에 대한 'buy-back' 옵션을 가지고 있다. 이 옵션은 부동산이 매각될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이익이 없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자산을 다시 사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하지만, 수쿠크의 경우 자산의 원래 소유자는 만기일에 자산을 다시 살 수 있으며, 자산의 가격은 처음과 동일하다.

둘째, 자산유동화와 달리 수쿠크의 경우 수쿠크 발행자가 더 높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발행자가 SPV의 전체 지분을 가

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는 날까지의 임대료 한정한다.
2.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 또는 입장권 등의 판매 대행
3.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
4. 그 밖에 법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법 제27조의2제3항에서 "업무계획 및 예상손익에 관한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업무계획서
2. 손익예상서
3. 정관
4. 부수업무 운영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
5. 그 밖에 부수업무 운영과 관련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법 제2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부수업무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은행의 명칭

57) Khan Tariquillah, Elsiefy Elsayed, Eunyoung Lee. (2014). "Legal and regulatory issues in issuing sukuk in south korea lessons from developed countries' exper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s, Commerce and Management

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의 적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기존 금융자산유동화와 수쿠크는 해당하는 자산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이다. 자산유동화에는 부동산과 담보채권을 포함한 모든 유형 및 무형 자산이 포함된다. 하지만, 수쿠크의 경우 유형자산만 허용한다.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현행 은행법은 수쿠크의 발행에 있어 어려움을 야기한다. 국내의 은행과 금융 기관들은 사업 목적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취급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은행법 시행령 제18조(부수업무의 범위 등)⁵⁸⁾에 부동산의 매매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내 은행은 부동산으로 수쿠크를 지원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회사 수쿠크를 발행할때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⁵⁹⁾

2) 다른 나라의 도입 사례 분석

(1) 일본

일본은 사회적·문화적인 환경과 더불어 이슬람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 한국과 가장 유사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슬람 금융 분야에서는 한국보다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극소수의 이슬람 인구를 가진 한국보다 더 적은 이슬람 인구를 보유한 일본이 오히려 이슬람 금융에 있어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이슬람에 대한 인식이 높다기 보다, 이슬람 금융의 경제적인 가치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이슬람 금융 이니셔티브를 창안하고 일본 내에서의 이슬람 금융 촉진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이슬람 금융에 대한 관심은 2005년경 시작되었다. 일본의 금융 기관들은 말레이시아와 아랍 에미레이트의 이슬람 금융

58) 김한수김보영. (2012). "이슬람금융의 현황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59) 강대창, 손성현, 서영경. (2016) "비이슬람 국가의 이슬람 금융 정책과 시사점: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사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관들과의 협력을 피하였으며, 일본의 이슬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수단으로 하나로 이슬람 금융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2007년, 일본 기업들의 해외 자회사가 수쿠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수쿠크 시장에 뛰어들었다.

[표 IV-4] 이슬람 금융에 관한 일본의 법률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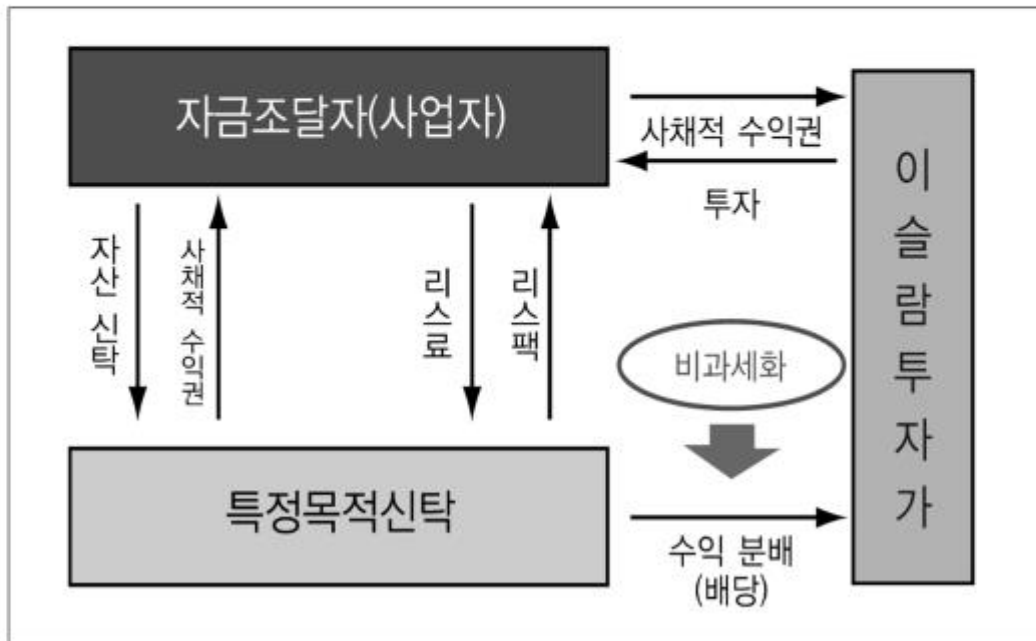
연도	법률	개정내용
2007	금융상품거래법 (Financial Instrument and Exchange Law/ FIEL)	<p>기존의 증권거래법을 수정하여 새로운 금융상품거래법 발표</p> <p>펀드 형태의 금융 상품을 포함한 집합 투자기구의 수익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여, 출자 금융 형태인 무다라바 등 이슬람 금융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으로 인정⁶⁰⁾</p> <p>▶ 일본 금융기관의 해외 자회사들이 이슬람 금융 사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p>
2008	은행법 및 보험업법 (Banking Law and Insurance Business Law)	<p>은행의 상품 매매를 인정하지 않았던 기존의 은행법을 개정하여, 은행의 자회사가 행할 수 있는 업무 영역에 Murabahah, Ijarah 등 특정 이슬람 금융을 금전대출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포함시킴</p> <p>▶ 일본 은행과 보험회사의 자회사들이 Murabahah, Ijarah를 포함함 특정 이슬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p>

2009	세법	▶ 해외의 국부펀드가 일본의 채권 또는 예금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면제되도록 함
2011	조세특별조치법, 자동유동화법	이슬람 금융과 기존 금융의 조세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특별조치법, 자동유동화법 등 세제 개편을 실시함 ▶ 해외투자자가 수취하는 사채적 수익권 배당에 대하여 비과세 하도록 함

※ 출처: Khan Tariqullah, Elsiefy Elsayed, Eunkyong Lee. (2014). "Legal and regulatory issues in issuing sukuk in south korea lessons from developed countries' exper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s, Commerce and Management

일본은 이슬람 금융의 국내 활용을 위하여 성공적인 도입을 위하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련된 세제 개편에 힘써왔다. 특히, 2011년 조세특별조치법, 자산유동화법 등의 세제를 개편하여 일본 내 Jjarah 수쿠크의 발행을 가능하게 했다. 이 세제 개편을 통하여, Ijarah 수쿠크를 특수목적신탁을 통해 발행된 사채적 수익권으로 정의하고, 이 사채적 수익권 발행시 발생하는 각종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에 15% 소득세 및 법인세가 원천 징수되었던 사채적 수익권의 배당 및 상환 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였다. 또한, 조세특별조치법 제83조3를 신설하여 관련 등록·면허세를 감면하여, 특정 사채적 수익권에 대한 특수목적신탁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신탁재산을 환매할 경우 소유권 등록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면세특례가 적용되었다.⁶¹⁾

[그림 IV-1] 일본의 수쿠크 발행 및 거래 방식



※ 출처: 강대창, 손성현, 서영경. (2016) “비이슬람 국가의 이슬람 금융 정책과 시사점: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사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표 IV-5] 2011년 일본의 세제 개편 항목

현황 및 문제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슬람 투자자는 종교상의 이유로 이자 수취가 금지되어 출자 형태의 수쿠크에 한하여 투자 가능 2. 주요국에서는 해외투자자가 수취하는 수쿠크의 배당이 비과세 처리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과세 처리되는 문제점이 존재함.
요망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외투자자가 수취하는 특정목적신탁의 사채적 수익권 배당을 비과세 처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채적 수익권이란 미리 정해진 금액의 배분을 받는 수익권을 말하며 법률상으로 수쿠크은 투자 가능한 출자에 해당함. ※ 현재 해외투자자가 수취하는 공사채의 이자는 비과세 처리되고 있음

※ 출처: 강대창, 손성현, 서영경. (2016) “비이슬람 국가의 이슬람 금융

60) CIA The World Factbook: Singapore 참조

61) Khan Tariqullah, Elsiefy Elsayed, Eunyoung Lee. (2014). “Legal and regulatory issues in issuing sukuk in south korea lessons from developed countries’ exper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s, Commerce and Management

용 정책과 시사점: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사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부의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이슬람 금융 인프라 구축 노력과
동시에, 일본 도쿄거래소(TSE)와 일본증권업협회(JSDA)도 예탁 결제
시스템 등 이슬람 금융 거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2012
년 4월에는 일본 내 수쿠크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 인프라 구축
에 성공하였다.

이처럼, 일본은 앞으로의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이슬람 금융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슬람 금융의 성공적인 도입 및 확대를 위하여 노
력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 한국보다 좀 더 성
숙한 이슬람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서고 있다.

(2)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전체 인구의 14.3%가 무슬림으로⁶²⁾, 주변의 말레
이시아나 인도네시아와 비교했을 때 이슬람 인구가 많은 국가가
아니다. 하지만, 홍콩과 함께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를 목표로 함에
따라, 싱가포르는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이슬람 금융의 발달은 법률의 개정이 요구되지
않는 예금과 뮤추얼 펀드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1998년 OCB은
행이 싱가포르 최초로 이슬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작되었
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99년 이슬람 원칙에 기반한 이슬람 금융
상품 도입의 이점에 대한 논쟁과 관련한 의회의 압박을 받으며 싱
가포르 정부의 이슬람 금융 도입 노력이 시작되었다.⁶³⁾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글로벌 이슬람 금융 시장과 함께 싱가포
르 국내에서도 이슬람 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증가하기
시작하자, 싱가포르 정부는 이슬람 금융에 적합한 환경을 구축하

62) 세법연구센터(2011). “싱가포르의 이슬람금융에 대한 세법 개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63) 김한수김보영. (2012). “이슬람금융의 현황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2013년, 싱가포르금융청(MAS)은 이슬람 금융 감독 위원회(IFSB)에 Observer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2005년에 정회원이 되었다. 싱가포르통화청은 IFSB의 회원으로서 이슬람 금융의 감독 및 규제 인프라 구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정부 차원에서 이슬람 금융 국제 기구 및 금융 기관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증진하였다.

더불어, 싱가포르 정부는 이슬람 금융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이슬람 금융과 관련된 법률 및 제도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개정을 시작하였다. 2005년, 샤리아 원칙에 근거하여 부동산 매매의 형태를 띤 이슬람 금융 거래에 있어서 실물 자산의 매매시에 중복으로 부과되는 인지세를 면제하였다. 또한, 이슬람채권인 수쿠크에서 발행하는 이익에 대하여 기존 채권이 이자 수익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뒤이어, 2006년에는 이슬람 금융의 특성상 구조적으로 수반되는 실물 거래에 대하여 소득세와 소비세를 면제하는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이중과세 면제 규정은 Murabaha, Mudarabah, Ijarah에 먼저 적용되었다가, 2011년 또 한번의 세법 개정으로 Musharakah, Istisna, Salam으로 확대되었다.

2011년 개정된 이슬람 금융에 대한 세법규칙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⁶⁴⁾

- ▶ 2006년 세법규칙의 개정으로 규정된 **Murabaha**의 개념 명확화
- ▶ 소득에 대한 과세에서 이자의 개념 확대
 - 이슬람 금융 거래에서, 기존의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발생한 수익은 세무상 이자에 포함(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이자에 해당)
- ▶ 이슬람 금융의 특성상 수반되는 소비세(**Goods and Services Tax**) 면제
 - 기존의 금융거래와는 달리 이슬람 금융의 특성상 상품의 공급을 수반하게 되므로, 상품 공급에 대하여 소비세가 부과됨. 따라서, 예외적으로 특정 이슬람 금융 거래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상품공급에 대하여 소비세를 면제.
- ▶ 인지세에 대한 이중 부과 방지
 - 특정 이슬람 금융 거래에 수반되는 부동산 이전에 대한 인지세 면제 및 감면

64) MauroFilippo di, CaristiPierluigi, CoudercStephane, MariaAngela, Ho Lauren, GrewalBaljeet Kaur, . . . ZaherSajjad. (2003). "Islamic Finance in Europe." European Central Bank.

[표 IV-6]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발전 과정

1995	· HSBC Insurance(싱가포르)는 샤리아에 일치하는 HSBC-Link Ethical Global Equity Fund를 출시
2001	· 말레이시아 Maybank가 싱가포르에서 이슬람은행 사업을 시작
2003	· MAS는 IFSB 준회원으로 가입
2005	· Maybank는 이슬람식 온라인 저축계좌와 당좌계좌 출시 · 타카풀 Sinarna Fund 출시 · MAS는 IFSB 정회원 승격 · MAS는 이슬람금융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 인지세 제거, 수쿱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전통적채권의 이자로 간주
2006	· 최초의 샤리아 주식 인덱스 상장 · OCBC 은행은 최초의 이슬람식 예금을 출시 · MAS는 은행의 비금융활동에서 상품 거래를 허용 · MAS는 수쿱을 포함한 이슬람금융 상품에 대해 소득세 및 소비세에 관한 처리 원칙을 발표
2007	· DBS 그룹은 이슬람은행 IBA(Islamic Bank of Asia)를 설립
2008	· 최초의 샤리아 ETF 상장 · MAS는 이슬람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5% 경감세율 적용
2009	· MAS는 이슬람은행에 대한 은행법 적용에 관한 원칙 발표
2010	· 말레이시아 국부펀드 Khaznah는 싱가포르에서 15억 싱가포르 달러 규모의 수쿱을 발행하였으며 발행량의 60%를 싱가포르에서 소화
2011	· 싱가포르 거래소에 최초의 샤리아 REIT인 Sabana REIT가 상장됨 · 무라바하, 무샤라카, 이스티스나, 와카라 구조의 이슬람금융거래를 세제 혜택에 포함시킴

※ 출처: 김한수김보영. (2012). “이슬람금융의 현황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싱가포르 정부의 이슬람 금융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은 관련 세법의 개정 뿐만 아니라 금융법의 개정에서도 나타난다. 2005년 은행법을 수정하여 이슬람 금융 기법의 하나인 Murabaha 거래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기존의 은행이 비금융 활동으로 고객의 투자를 위해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뒤이어 더 다양한

이슬람 금융 기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금융법을 개정하였다. 이후 2009년 ‘이슬람은행에 대한 은행법 적용에 관한 원칙’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⁶⁵⁾

[표 IV-7] 싱가포르의 이슬람 은행에 대한 은행법 제개정 내용

규정		관련 금융 기법	주요 내용
자금 모집 (fund collecting)	은행법 23	무라바하 예금	은행의 비금융 자산 취득 허가
	은행법 4A		은행 예금의 미확정 마진 구조 허가
융자 및 투자 (financing and investment)	은행법 22	무라바하 자금조달	은행의 비금융 자산 취득 및 마진 거래 허가
	은행법 23A	무라바하 은행간 대차	은행간 자산 취득 및 마진 거래 허가
	은행법 23B	이자라 와 이끄티나	은행의 비금융 자산 취득 및 임대 허가
	은행법 23C	감축 무샤라카	은행과 고객 간 공동 비금융 자산취득 및 이전에 대한 조건부 허가
	은행법 23D	현물 무라바하	은행의 비금융 자산 취득 및 해당 자산에 대한 조건부 현물가격 기준 판매 허가
	은행법 23E	이스티스나	은행의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자금조달 및 자산 소유권 이전 허가

※ 출처: 강대창, 손성현, 서영경. (2016) “비이슬람 국가의 이슬람 금융 정책과 시사점: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사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은 MAS에 의해 기존의 금융기관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감독된다. MAS는 이슬람 금융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동시에 혜택도 주지 않고 기존의 금융기관들과 동등하게 되도록 제도적·정책적으로 힘쓰고 있다.

이처럼, 싱가포르 정부는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발돋움 하기 위하여 기존 금융의 대안책이 될 수 있는 이슬람 금융에도 막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법률과 제도 등을 정비해오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정

65) GRASSA Rihab, HASSAN M. Kabir. (2015). “Islamic Finance in France: Current Stat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책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이룩한 선진화된 금융 제도와 규제 환경을 통해 이슬람 금융 또한 비교적 문제없이 정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프랑스

프랑스의 이슬람 금융 발전은 국내 재정을 위해 이슬람 금융에 적절하고 친근한 환경을 조성한 프랑스 정부의 강한 지원에서 기인한다.⁶⁶⁾ 2007년 12월부터 프랑스 정부는 금융 중심지로서의 파리의 역할 증진을 지원하는 조직인 Paris Europlace는 Islamic Finance Commission(이슬람 금융위원회)를 설립하면서부터 이슬람 금융의 개발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후 2008년 7월, 프랑스 금융 시장 규제 기관인 AMF (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는 샤리아 준수 투자 기금 및 수쿠크 상장을 허용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마찬가지로, Bourse de Paris(파리 증권거래소)는 수쿠크 세그먼트를 만들었고, 기존의 금융 상품들과 비교하여 동등한 세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네가지 세금 규정을 발표하였다. Murabahah, Sukuk, Ijarah and Istisna 상품과 관련된 이 변경 사항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되었다.

마찬가지로, 2008년 12월, 재무장관은 수쿠크 발행을 위해 실물자산 등기, 회계 및 법 수정 내용을 관련 부처에 전달하였다. 뒤 이어 2009년 수쿠크 가이드북은 수쿠크에 적용되는 법률 개념과 세법을 명확히 하는데 기여했다.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2010년 7월, 수쿠크를 비롯 Ijarah, Murabaha, Istisna 대출 상품이 프랑스 내에서 거래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인지세의 이중 부과를 없애 수쿠크 발급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수쿠크 발행자가 지불한 보상은 기존 채권에

66) Khan Tariqullah, Elsiefy Elsayed, Eunyoung Lee. (2014). "Legal and regulatory issues in issuing sukuk in south korea lessons from developed countries' exper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s, Commerce and Management

있어 이자와 동등하게 간주되어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되도록 하였다. 또한 비거주자인 수쿠크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프랑스 법률 혹은 다른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프랑스내에서 원천징수세가 면제되도록 하였다.

2011년 11월, Paris Europlace는 프랑스내 수쿠크 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프랑스 수쿠크 가이드를 발족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프랑스는 2017년에 9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 수쿠크 시장에서 프랑스 기업과 정부를 위한 자금의 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서의 이슬람 금융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2011년, 프랑스 패스트푸드 부문에서 6백만 달러 규모의 최초의 프랑스 수쿠크가 발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6월 프랑스는 최초의 이슬람 예금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것은 기존 은행의 이슬람 윈도우를 통해 운영되었다. 이 성공적인 시작에 이어 이슬람 주택 금융 상품인 10년짜리 Murabahah 계약이 도입되었다. 이 이슬람 주택 금융 상품은 주택금융이 프랑스 고객들의 주요 관심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강한 수요를 충족시켰다.

이처럼 성공적으로 도입된 이슬람 은행 서비스로, 2015년 기준 Chaabi Bank는 프랑스 전역에 17개의 지사를 통해 샤리아 준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French Moroccan bank의 자회사인 Chaabi Bank는 고객에게 부동산 파이낸싱을 위한 Murabah 솔루션 및 이슬람 예금 계좌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4년, 프랑스의 Alliance International Holding은 튀니지 건설 프로젝트에 이슬람 금융 및 투자를 사용하는 300만달러 규모의 TunisFinancial Harbour Project를 위해 바레인의 Gulf Finance House와 조인트 벤처 회사를 설립하였다. 또한, 프랑스 은행인 BPCE와 Qatar Islamic Bank는 프랑스에서 MOU를 체결하였다.

정부의 적극적인 이슬람 금융 도입 지원 정책과 더불어 프랑스는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더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 당국은 2020년까지 프랑스의 기업, 부동산 및 금융 시장에서의 대출 및 투자를 통해 이슬람 자산에서 미화 1200억 달러를 유치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 금액중 60%정도가 프랑스 내 무슬림으로부터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이슬람 인구 중 일부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샤리에 원칙이 위배되는 이자를 지급하는 기존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있어, 이슬람 은행의 설립 및 운영으로 프랑스는 자국내 무슬림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이슬람 금융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유럽의 이슬람 금융 센터가 될 충분한 가능성을 지닌 프랑스는 이슬람 금융을 통해 중동의 오일머니를 유치하여 외환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국내 이슬람 금융 거래를 촉진하기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4) 영국

1970년대부터 이슬람 경제권과 활발한 교류를 했던 영국은 서구에서 이슬람 금융 분야에 있어 가장 큰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영국이 이슬람 금융 자산 관리에 있어 세계에서 9번째로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뒷받침한다. 영국의 관리하에 있는 총 자산은 190억달러규모이다. 영국의 이슬람 금융의 역사는 비교적 긴 편이다. 1970년대부터 이슬람 금융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1981년에는 Citi그룹의 이슬람 금융 사업 법인이 설립되었다. 다음의 '표 IV-7 영국 이슬람 금융 기관의 발전'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영국 금융 기관들이 이슬람 금융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였다. 그 결과, 2013년 기준 영국에는 20개 이상의 이슬람은행이 있으며, 그 중 샤리아 준수 전업은행은 6개이다.

[표 IV-7] 영국 이슬람 금융 기관의 발전

연도	금융기관	이슬람 금융 서비스
1982	Albaraka International Bank	•Islamic Mortgages
1996	United Bank of Kuwait (AUB)	•Islamic Mortgages
2003	HSBC Amanah	•Islamic Mortgages •Treasury and Investment Services •Private banking
2004	ABC International Bank (Alburaq)	•Islamic Mortgages
	Islamic Bank of Britain	•First Islamic Retail Bank (최초의 이슬람 리테일 은행)
	RBS/Bank of Ireland	•Islamic Commercial property financing
2005	European Islamic Investment Bank(EIIB)	•First wholesale Islamic Investment Bank in the UK (최초의 이슬람 도매 투자은행)
	Lloyds TSB	•Current Account
	Children's Mutual	•Children Mutual Fund
2007	Bank of London and the Middle East (BLME)	•wholesale Islamic Investment Bank
2008	QIB.UK (European Finance House)	•wholesale Islamic Investment Bank
	Gatehouse Bank	•wholesale Islamic Investment Bank
	British Islamic Insurance Co	•Takaful •BIIH closed to new business from

		November 2009
2013	Abu Dhabi Islamic Bank (ADIB)	•Representative Office
	Cobalt Underwriting	•Wholly Sharia compliant insurance products

※ 출처: UKTI(2014).“UK Excellence in Islamic Finance” UK Trade & Investment.

이러한 금융업계의 활발한 움직임과 더불어, 영국 정부도 런던을 서구의 이슬람 금융 중심지로 만들기 위하여 이슬람 금융 환경 조성을 시작하였다. ‘표 IV-7 이슬람 금융에 대한 영국의 규제 개편’에서 나타나듯이, 영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이슬람 금융이 차별없이 거래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표 IV-8] 이슬람 금융에 대한 영국의 규제 개편

연도	내용
2001	•영국 은행 (Bank of England)은 이슬람 금융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장애물을 조사하고 영국내 이슬람 금융을 개발할 수 있도록 Islamic Finance Working Group을 설립
2003	•이슬람 금융의 기술적인 성격에 대한 세부 사항과 구체적인 이슈들을 이해하기 위해 HM Treasury and HM Revenue & Customs Tax Technical Group을 설립 •Finance Act(금융법) Stamp Duty Land Tax(토지인지세) 이슬람 모기지를 포함하여 대안적인 부동산 파이낸싱 계약을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해당되며, 이슬람 거래

	<p>특성상 금융 기관이 부동산을 구입한 다음 고객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토지인지세에 대한 이중 부과를 없앴</p>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3년 부동산에 적용되었던 토지인지세 이중 부과 방지 규정이 지분 공유형 약정으로 확대 •Murabaha 기법이 구매 및 재판매 계약으로 규정됨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diminishing Musharaka, 즉 감축 동업 방식의 자산 구매 금융 거래가 규정됨 •토지인지세 이중 부과 방지 규정이 법인으로 확대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국의 이슬람 금융 개발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하여 정부에 조언하기 위한 기구로 정부, 법률 및 자문회사, 무슬림 공동체 출신으로 구성된 HM Treasury Islamic Finance Experts' Group을 설립 •영국 정부는 국채 Sukuk 발행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시작함 <p>이슬람 금융 방식을 통한 Home Purchase Plans에 대한 지침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HM Revenue & Customs(영국의 세무당국)에서 세무상 자본충당, 부가가치세, 자본이득세를 포함한 이슬람 금융 기법의 조세 처리에 관한 지침 마련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잠재적인 수쿠크 발행에 대한 영국 정부의 발표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UK Islamic Finance Secretariat(영국 이슬람 금융 사무국)이 설립되어 영국의 이슬람 금융의 진흥 및 발전을 지원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관급의 주도로 영국을 이슬람 금융의 중심지로 부상시키고 내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TheCityUK 내에 Islamic Finance Task Force(이슬람 금융 테스크포스) 설립
------	---

※ 출처: UKTI(2014).“UK Excellence in Islamic Finance” UK Trade & Investment.

[표 IV-9] 이슬람 금융에 대한 영국의 감독 체계 구축과 조세 정비

분야	연도	내용
모기지	2003	이자라 방식의 모기지를 활용하는 개인에 대해 인지세 이중과세 방지 조항 마련
	2005	인지세 이중과세 방지 조항을 감축동업 방식의 모기지를 활용하는 개인으로 확대
	2006	인지세 이중과세 방지 조항을 이자라와 감축동업 방식의 모기지 방식을 활용하는 기업으로 확대
대출 상품	2005	무라바하 방식을 대출로 처리
	2006	감축동업 방식의 자산 구매 금융 방식을 규정
예금	2005	무다라바를 예금 방식으로 규정
	2006	와칼라도 예금 방식으로 규정하고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감면
수쿱	2007	수쿱을 대체 금융투자 채권로서 채무 수단으로 처리하여 수쿱의 투자 수익에 대해 이자 소득과 동등하게 조세 처리
	2008	수쿱과 관련된 실물 거래에 대한 인지세(SDLT)와 인지세 원천세의 이중과세 방지 조항 신설
	2009	수쿱과 관련된 실물 거래에 대한 인지세와 인지세 원천세의 이중과세 방지 조항에 대한 규정 명확화
	2010	자산근거부 수쿱을 집합투자체계에서 제외하여 자산근거부 수쿱과 채권의 감독 중립성 확보

※ 출처: 강대창, 손성현, 서영경. (2016) “비이슬람 국가의 이슬람 금융 정책과 시사점: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사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처럼, 영국 정부는 2000년부터 이슬람 금융의 성장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규제·감독 및 조세의 측면에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노력에 힘입어 영국에서 이

슬람 금융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세계에서 9번째 규모의 이슬람 금융 시장이 되어, 비 이슬람국가들 사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이슬람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이슬람 금융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슬람 금융의 세계적인 추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이슬람 금융에 대한 수요 및 시장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세계적으로 이슬람 금융은 그 규모가 2006년 500억 달러에서 2017년 3,190달러 규모로 6배나 성장했으며, 지난 10년간 11%대의 두 자릿수 성장을 해오면서, 글로벌 금융 산업에서 하나의 큰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기존의 금융의 대안책으로서 안정성과 윤리성을 특징으로 하는 이슬람 금융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그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슬람 금융의 안정적인 도입을 통해 외환 자금 조달의 경로를 다양화하고, 선진적인 금융시장을 이룩하여 ‘창조금융’을 실현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슬람 금융에 대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혼련(연구)국인 말레이시아의 선진화된 이슬람 금융의 성장 배경 및 요인을 분석하고, 말레이시아 정부의 제도적·정책적인 노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조세 분야에 있어 이슬람 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말레이시아와 더불어 한국과 같은 비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금융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나라인 일본, 싱가포르, 프랑스,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한국의 이슬람 금융 도입 현황을 연구하는 동시에 이러한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그 시사점과 우리나라의 제도적·정책적 측면에서의 제안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이슬람교의 기반이 없더라도 이슬람 금융을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슬람교가 국교인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 금융이 발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질 지 모른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일본, 싱가포르, 프랑스, 영국의 사례와 같이 이슬람 인구가 적은 비 이슬람 국가에서도 이슬람 금융의 도입이 성공적으로 진행

되고 있다.

둘째, 이슬람 금융의 성공적인 국내 도입을 위하여 조세 관련은 물론 종합적이고 폭넓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아시아 이슬람 금융의 중심지인 말레이시아를 비롯하여 5개국의 이슬람 금융의 도입 사례를 분석한 바, 이들 국가들의 이슬람 금융 발전에는 각국 정부의 적극적이고 꾸준한 지원이 있었다. 샤리아 율법에 기초한 이슬람 금융의 특성상 현행 국내 법규로는 이슬람 금융의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른 나라의 도입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이슬람 금융 도입에 장애물이 되는 법규의 개정은 불가피하다. 해당국들은 이러한 구체적인 장애물들을 제도적 정비를 통해 제거함으로써 이슬람 금융을 국내에 안정적으로 도입시킬 수 있었다.

특히, 조세 분야에 있어서의 개선은 이슬람 금융의 도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앞서 각 사례에서 살펴 보았듯이, 이슬람 금융에 대한 조세의 중립성 확보가 핵심이다. 조세의 중립성 확보는 이슬람 금융에 있어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금융 거래와 비교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세금 부과를 하자는 것이다. 현행 세법상 이슬람 금융은 기존 금융 대비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이슬람 금융 거래가 사실상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선 사례에서 영국 등은 이러한 조세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들을 개정하였다. 영국 등의 제도적 정비의 목적은 이슬람 금융에 대한 혜택 부여가 아닌, 기존 금융과 동등한 중립적인 세금 부과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슬람 금융에 특혜를 주는 세금 인센티브 제도는 사례 분석 국가들 중 이슬람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을 뿐이다.

셋째, 제도적 정비뿐 아니라 이슬람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활동도 요구된다. 사례 분석을 통하여, 이슬람 금융 관련 기구의 설치, 관련 가이드 및 지침 마련, 이슬람 금융

권과의 활발한 대외 활동 및 협력, 이슬람 금융 관련 전문가 양성 등 선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활동이 이슬람 금융의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이 이슬람 금융을 도입해야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외환 자금 조달의 경로를 다양화 하는데에 있다. 미래에 다가올 지 모르는 금융 위기에 대비해 다양한 자금 확보 루트를 개척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8년 금융위기에서 겪었듯이 미국 및 유럽의 자금에만 의존하다 보면 미래에 외환 유동성에 있어 위기가 찾아올 지 모른다.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책으로 이슬람 금융을 안정적으로 도입하여 오일 머니 등 풍부하고 다양한 자금 경로를 확보함과 동시에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실현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VI. 참고문헌

- Asia Briefing. (2014년 7월 23일). “Asia: the Future of Islamic Finance?”
Asia Briefing:
<http://www.asiabriefing.com/news/2014/07/asia-future-islamic-finance/>에
서 검색됨
- Bank Negara Malaysia(말레이시아중앙은행). (2015). “ASIA: Future
prospect for Islamic Fnanace.” Bank Negara Malaysia.
- Bank Negara Malaysia(말레이시아중앙은행). (2016). “Financial Stability
and Payment Systems Report 2016: Islamic Fnanace Development.”
Bank Negara Malaysia.
- Oxford business group. (2013). “Brunei Darussalam: Islamic banking
earmarked for further growth.”
- KFH Research Ltd. (2013). “Islamic FInance In Asia: Development,
Growth and Opportunities .” KFH Research Ltd
- Open University Malaysia (OUM). (날짜 정보 없음). “KONSEP SISTEM
KEWANGAN ISLAM.” Open University Malaysia (OUM).
- The Star Online. (2014). “Malaysia remains leading sukuk issuer.” The
Star Online.
- MIA. (2012). “Tax treatment on islamic finance in Malaysia”. Malaysian
Institute of Accountants(MIA).
- 복덕규. (2017).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성장은 계속된다”.
Kotra해외시장뉴스.
- AlfatakhAmir. (2017). “The emergence of Islamic Finanace.” AMIR
ALFATAKH YUSOF ISLAMIC BANKING .
- MGCC(Malaysian-German Chamber of Commerce). (2015). “The
development of the Islamic finance industry.” MGCC.
- MIFC(Malaysia International Islamic Financial Centre). (2014). “Innovations
drive expansion of global: Islamic finanace industry.” MIFC.

- IFSB(Islamic Financial Services Board).(2015). "Islamic Financial Services Industry Stability Report." IFSB
- Oxford business group. (2013). "Brunei Darussalam: Islamic banking earmarked for further growth." Oxford business group.
- Jacqueline Loh. (2015). "Enhancing linkages between Asia and the Middle East" Jacqueline Loh.
- South China Morning Post. (2015). "Hong Kong government sells second Islamic sukuk bond to raise USD1.1 bln." South China Morning Post.
- Gulf News Markets. (2015). "Hong Kong Sharia Finance Goals Elusive as Second Sukuk Readied." Gulf News Markets.
- Bloomberg Business. (2015). "China Readies for Islamic Finance With a Little Help from Gulf." Bloomberg Business.
- India Briefing. (2013). "Bombay Stock Exchange Launches Shariah Index." India Briefing.
- Channel NewsAsia. (2015). "Malaysia, Japan to enhance cooperation in Islamic finance." Channel NewsAsia.
- Nortonrose Fullbright. (2010). "A new era for Islamic finance in Asia Pacific." Nortonrose Fullbright.
- Reuters. (2014). "Bank of Korea joins Islamic finance body IFSB." Reuters.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3). "해외 주요국 이슬람 금융 도입현황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나희량. (2011). "말레이시아 이슬람금융: 소비자 선호체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UAE Laws and Islamic Finance. (2012). "Laws and regulation." UAE Laws and Islamic Finance.
- 김한수김보영. (2012). "이슬람금융의 현황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Yagoub Elryah (2016). “Islamic Finance in South Korea: Past and Future Challenges Development”

김효진. (2016년 1월 12일). “우리은행 첫 거래 이슬람 금융기법이란?”.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5934.html에서
검색됨

Yvonne Tuah(2016) “ Islamic finance: The unconventional but nascent financial system” Borneo post online.

PWC(PRICEWATERHOUSECOOPERS). (2009). “My Islamic Finance.”
PWC.

강대창, 손성현, 서영경. (2016) “비이슬람 국가의 이슬람 금융 정책과
시사점: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사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han Tariqullah, Elsiefy Elsayed, Eunkyong Lee. (2014). “Legal and
regulatory issues in issuing sukuk in south korea lessons from
developed countries’ exper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s,
Commerce and Management

Reuters. (2014). “Bank of Korea joins Islamic finance body IFSB.”
Reuters.

조진형. (2010년 5월 13일). “이슬람 금융으로 국내기업 첫 자금 조달
성공...동화홀딩스 2400만弗”. 한국경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0051329101>에서 검색됨

김기태. (2011년 3월 7일). “말레이시아에서 불어오는 수쿠크법 좌초의
후폭풍”. 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9142.html에서 검색됨

나현철. (2011년 3월 4일). “수쿠크법 부산 후폭풍 ... 말레이시아 자금
조달 차질”.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5140407>에서
검색됨

Thomson Reuters. (2016). “State of the Global Islamic Economy Report
2016/17.” Thomson Reuters.

강대창(2012).“이슬람 금융의 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수쿱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MauroFilippo di, CaristiPierluigi, CoudercStephane, MariaAngela, Ho
Lauren, GrewalBaljeet Kaur, . . . ZaherSajjad. (2013). “Islamic
Finance in Europe.” European Central Bank.

GRASSA Rihab, HASSAN M. Kabir. (2015). “Islamic Finance in France:
Current Stat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세법연구센터(2011).“싱가포르의 이슬람금융에 대한 세법 개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UKTI(2014).“UK Excellence in Islamic Finance” UK Trade & Investment.